

經營學博士學位論文

한·미 *FTA*의 推進 現況分析과
韓國의 對應戰略에 관한 研究

*A Study on Korean Strategies and Situational
Analysis for Korea-USA FTA*

指導教授 崔 宗 洙

2007年 2月

韓國海洋大學校大學院

貿 易 學 科

安 春 福

本 論文을 安春福의 經營學博士
學位論文으로 認准함.

委員長 尹 光 云 (印)

委 員 金 勇 進 (印)

委 員 辛 瀚 源 (印)

委 員 鄭 鴻 悅 (印)

委 員 崔 宗 洙 (印)

2007年 2月 日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 목 차 >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3
1. 연구의 방법	3
2. 연구의 구성	4
제2장 FTA의 본질과 협상전략	5
제1절 FTA의 개념과 기대효과	5
1. FTA의 개념과 유형	5
2. FTA의 대상범위 및 법적근거	11
3. FTA의 대상국 선정동기와 기대효과	14
제2절 FTA의 추진동향	19
1. 유형별 RTA 체결현황	19
2. 지역별, 시기별 RTA 체결현황	19
3. 주요국의 FTA 추진동향	21
제3절 FTA의 협상전략	25
1. FTA 협상과정	25
2. 내부협상전략	27
3. 외부협상전략	28
제3장 한·미 FTA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 분석	30
제1절 한·미 FTA의 의의	30
1. 한·미 FTA의 출범 배경	30
2. 한·미 간 교역규모 비교	31
3. 한·미 FTA 추진 중요성	33

제2절 한·미 FTA 추진현황 분석	35
1. 한·미 양국의 FTA 추진현황	35
2. 한·미 FTA 추진일정 및 내용	39
3. 한·미 FTA 협상추진 과정	40
제3절 한·미 FTA의 기대효과 분석	55
1. 기대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55
2. 기대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58
3. 각 산업분야별 기대효과 분석	62
제4장 한·미 FTA 추진에 따른 제 문제	66
제1절 한·미 FTA의 추진 과정상 문제	66
1. 추진 준비와 절차상의 문제	66
2. 추진에 따른 사회 갈등문제	68
3. 추진 과정에 따른 기타 문제	70
제2절 한·미 FTA 추진 찬·반 논쟁	74
1. 한·미 FTA 찬성론	74
2. 한·미 FTA 반대론	78
3. 한·미 FTA 찬·반론에 대한 비판	80
제3절 한·미 당사국간 주요쟁점	81
1. 한·미 당사국의 입장	81
2. 한·미 FTA 협상 과정상 쟁점	85
3. 한·미 FTA 향후 추진쟁점 분석	91
제5장 한·미 FTA의 성공적 대응전략	94
제1절 한·미 FTA 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94
1. 한·미 FTA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설득	94
2. 한·미 FTA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97
3. 한·미 FTA에 대한 정부 및 정치권의 조율	97
제2절 취약산업과 피해예상계층에 대한 대책	98

1. 취약 산업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책	98
2. 피해계층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책	99
3. 합리적 구조 조정과 경쟁력 강화	100
제3절 향후 대미협상의 성공적 추진전략 방안	101
1. 미국측 전략 분석에 따른 합리적 대응	101
2. 전문인력 확충과 분야별 대표자 협상 참여	103
3. 대미협상 쟁점 분야별 구체적 대응	104
제6장 결 론	110
참고문헌	113
부 록	119

〈표 목차〉

〈표 2-1〉 FTA의 유형분류	9
〈표 2-2〉 FTA의 발전 단계별 특징	11
〈표 2-3〉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다자주의 규정	13
〈표 2-4〉 FTA 대상국 선정동기	15
〈표 2-5〉 FTA의 경제적 효과	16
〈표 2-6〉 일본의 FTA 추진현황	22
〈표 2-7〉 EU의 FTA 추진현황	22
〈표 2-8〉 EFTA의 FTA 추진현황	23
〈표 2-9〉 호주의 FTA 추진동향	24
〈표 2-10〉 멕시코의 FTA 추진동향	25
〈표 3-1〉 대미 수출입 규모	31
〈표 3-2〉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 동향	34
〈표 3-3〉 미국의 FTA 추진동향	36
〈표 3-4〉 한국의 주요국 서비스시장 개방요구 분야	38
〈표 3-5〉 한·미 FTA 추진일정	39
〈표 3-6〉 한·미 FTA 상품분야 쟁점비교	50
〈표 3-7〉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의 연구결과	59
〈표 3-8〉 한·미 FTA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61
〈표 3-9〉 한·미 FTA 산업별 영향	63
〈표 4-1〉 한·미 FTA 체결절차상의 현황 및 문제점	67
〈표 4-2〉 한·미 FTA 추진전략에 대한 평가(성적)	72
〈표 4-3〉 한·미 FTA 찬·반 논쟁점	75
〈표 4-4〉 한·미 FTA 추진배경	76
〈표 4-5〉 한·미 FTA 관련 기업의견	77
〈표 4-6〉 한·미 FTA 양국간 주요쟁점	84
〈표 4-7〉 제1차 협상결과 한·미 양국의 쟁점	86

<표 4-8> 한·미 양국의 상품분야 양허안 비교	88
<표 4-9> 한·미 FTA 제3차 협상 주요 쟁점사항	90

<그림 목차>

<그림 2-1> 유형별 RTA 체결현황	19
<그림 2-2> 대륙별 FTA 체결현황	20
<그림 2-3> 시기별 FTA 체결현황	21
<그림 2-4> FTA 내부협상 및 외부협상 과정	26
<그림 2-5> 윈셋의 크기 및 협상의 가능성	28
<그림 3-1> 한·미 FTA 효과분석	56
<그림 3-2> 한·미 FTA의 실질GDP 효과	62

Abstract

A Study on Korean Strategies and Situational Analysis for Korea-USA FTA

by An, Chun-Bok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Korea Maritime University*

The Korea-USA FTA is extremely important to Korea, considering aspects such as politics, diplomacy, security, and economy.

The Korea-USA FTA has already reached the 4th round of talk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bmit a strategy that helps Korea lead a successful negotiation by analyzing the outstanding issues and problems of both parties.

This study is based on secondary data such as existing documentary records, all kinds of press releases and government statistics.

Through the FTA with USA, who has the biggest domestic market in the world, the Korean government has caught up with the latest slow progress of FTA with different countries and at the same time aims to establish the comprehensive cooperation partnerships with USA in economy, diplomacy and security.

The FTA with Korea is also expected to be important to USA because they realize Korea has a good trade base in Far East Asia

and also realize that Korea is important in their diplomatic and military standpoints.

Accordingly, considering each party's standpoint, both of them must have a strong will for settling the Korea-USA FTA.

Though the Korean government has a strong drive for the Korea-USA FTA, they have not drawn national consensus, resulting in social conflict along with hot exhausting pros and cons. Additionally, it has disclosed several problems like the counterplans of the weak industries and damaged classes against the rush expediting of the Korea-USA FTA and also disclosed unpreparedness of the reasonable restructuring of the weak competitive fields and of the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And what's worse is, the Korean people are anxious if analysis and reasonable countermeasures for USA's strategy are prepared. Therefore, this study shows the countermeasures for progressing the successful Korea-USA FTA.

1. It is late, bu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public relations and persuade professionals, civil groups and the general public in order to promote an understanding of the national key opinion of the leaders and the general public for the Korea-USA FTA. Here, the active efforts of the beneficial exporting enterprises are requested.

2. As the Korea-USA FTA is promoted from the viewpoint of a long-term national vision, what is required is a systematic support to restructuring and competitiveness strengthening as well as a substantial compensation and preparing aid policy for weak industries and damaged classes.

3. USA tries to seal a deal within the FTA time limit, but Korea should not follow them but have full time to negotiate their own strategy. If the talks is delayed, Korea shall take this chance to bring restructuring of weak industries and securing competitiveness in the meantime. Also, Korea shall solve the national issues reasonably and shall also devote themselves to successful negotiation against USA on the basis of national consensus.

4. As the situation in every field is different, involving more professional populations on behalf of every field into the FTA, negotiators shall level up the talks and will also help in supporting of competitiveness promotion.

5. Amid the issues derived so far by the 4th round of talks, the priority of the talks shall be decided by economical logic and long-term viewpoint. In other words, the priority of the talks shall not be placed on political logic and short-term performance.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 이하 RTA)¹⁾형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이하 FTA)이다. 2006년 2월 3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FTA를 위한 본격적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한국은 그 동안 GATT, WTO의 다자주의 무역체제에 대한 무역자유화에 만족해 왔으나,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은 지역간 또는 양국간 협상에 의한 무역자유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었다. 2006년 7월 현재 GATT 및 WTO에 통보된 RTA는 197개를 넘어서고 있고, 2005년 기준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RTA협정국간 교역으로 나타났다.²⁾

FTA는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례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초보적인 형태의 지역경제 통합 형태이며, RTA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은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 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북미유럽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이하 NAFTA)사례를 통해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GATT 다자간 협상에서 보았듯이 협상의 어려움이 존재했고, 최근 WTO의 DDA협상이 실패함으로써 미국 등 통상주요국들은 FTA에 더욱 적극적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특히 국가경제의 7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 속에서 FTA협상에 소극적으

1) RTA(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내 국가간에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2) WTO <http://www.wto.org>

로 대처할 경우 자칫 역외국가로서 무역시장이 축소되어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WTO발표에 의하면 2005년 세계 교역의 50%이상이 FTA시장이며, FTA시장이 점점 확대 되는 반면, 비 FTA시장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³⁾

이에 한국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 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시 다발적으로 FTA 추진을 정책방향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먼저 FTA로 인한 경제 충격이 덜할 것으로 예상된 한·칠레 FTA(04. 4. 1)를 체결한 후, 싱가포르(06. 3. 2 발효), EFTA⁴⁾(06. 9. 1 발효)와 체결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미국, ASEAN,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14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 중 ASEAN과는 상품분야의 경우 이미 협상 타결(07초 상품 분야만 발효예정)하였고, 현재 서비스, 투자부문 협상을 진행 중이다.⁵⁾

특히, 한·미 FTA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안보라는 측면까지 고려해 볼 때 가장 중요한 FTA로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한·미 FTA에 대한 정부, 기업, 시민단체, 일반국민들의 관심 또한 클 수밖에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한·미 FTA에 관한 준비가 부족하였음을 곳곳에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정책대안모색과 설득부족, 국민들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급기야 보·혁 대결양상으로 번져가게 만들었다. 정부 측 주장에 의하면 오래전부터 FTA에 대한 협상준비를 해 왔고, 한·미 FTA에 대해서도 꾸준히 준비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국민과 시민단체들은 충분한 준비도 하지 않고 졸속 협상을 할 우려가 있다며

3) 이창우, 「무한시장 FTA」, 다만북스, 2005, pp.11~12.

4) Doha Development Agenda(도하개발어젠더):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을 지칭한다. 이 회의에서 각료들은 세계 무역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무역의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자유화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도하 각료선언을 채택했다.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결론을 얻는데 실패하였다.

5) 외국통상부, <http://www.fta.go.kr>

반발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FTA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준비 또한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학계에서조차 FTA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못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찬·반 논쟁으로 부상된 후에야 기업, 경제단체, 학계 등에서 학술대회나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정도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미 FTA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거대 경제권인 동시에 정치, 외교, 군사 면에서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협상이므로 정부, 기업, 시민단체, 학계에서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의 추진 현황 및 기대 효과를 분석하고,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찬·반 논쟁과 한·미 간 핵심쟁점사항을 분석하여, 한국측의 성공적 협상 체결 전략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미 FTA 협상을 위한 대응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한·미 FTA 체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타 지역 국가와의 FTA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과 신문보도자료, 설문조사자료, 정부 통계, 학술세미나자료, 각종 연구소의 연구보고서, 외교통상부 등 정부발표자료, 각종 실증적 연구자료 등 2차적 자료를 활용하여 한·미 FTA의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의 성공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다.

한·미 FTA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격렬한 찬·반 논쟁의 문제, 한·미 FTA 추진과정에 따른 제반 문제, 한·미 FTA 당사국간 주요쟁점사항들을 분석하고, 한·미 FTA의 성공적 협상 체결을 위한 대응 전략

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에 있어서 논문의 구성은 제6장으로 구분하였고,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서론부분으로 문제제기와 연구의 방법 및 구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FTA의 개념과 기대효과, FTA의 추진 동향 등, FTA에 대한 일반적인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과 FTA의 협상 전략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한·미 양국의 FTA 추진 현황과 한·미 FTA 추진일정 및 내용, 협상추진 과정, 기대효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미 FTA 추진과정에 나타난 찬·반 논쟁과 한·미 FTA의 추진 과제 및 한·미 FTA 당사국간 주요 쟁점 등 한·미 FTA 추진에 따른 제 문제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인 한·미 FTA의 성공적 협상 추진을 위한 대응 전략들을 모색하여 제시하였다.

제6장은 결론부분으로 본 연구의 요약정리와 함께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제2장 FTA의 본질과 협상전략

제1절 FTA의 개념과 기대효과

1. FTA의 개념과 유형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즉, 국가 간 제반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⁶⁾

초창기 FTA는 대개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으로 불려 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인접국가나 인접 지역뿐 아니라 원거리 국가와 보다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과거에 체결된 FTA나 개발도상국간에 체결되는 FTA는 체결국가간의 상품무역에 장애가 되는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함으로써 상품무역을 자유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최근에 체결되고 있는 FTA를 보면 상품교역의 자유화뿐 아니라, 농축수산물과 금융, 통신, 법률, 의료등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의 자유화, 지적소유권 보호강화 등 보다 포괄적인 형태의 FTA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FTA가 확산되게 된 이유는 2001년 11월 WTO 도하 각료회의에서 공산품과 농산품 관세 인하, 농산품 보조금 삭감, 서비스무역 자유화 등을 내용으로 한 다자간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이래, 해마다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과 재개를 반복하게 되었었다.

세계무역의 자유화는 본래 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을 통해 추진돼 왔다. 하지만 각국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 주요 무역국들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상이 아닌 상대국을 직접 지정해 양국 간에라도 자유무역을 실현하자고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 세계는 197개가 훨씬 넘는 FTA가 발효 중이거나 협상 중에 있

6) GATT 제24조.

다. 따라서 오늘날 전 세계 국가들이 FTA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WTO가 그 동안 추진해 왔던 DDA협상이 중단된 후 미국, EU, 인도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FTA 추진에 온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이 FTA가 확산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면 다음과 같다.⁷⁾

첫째, 거대 지역 블록에 대한 대응책에 있다.

1990년대의 지역무역협정의 새로운 봄은 1992년 EU의 발족과 1994년에 발효된 NAFTA⁸⁾에 크게 기인한다. 아시아를 제외한 세계 경제가 두 개의 큰 블록으로 통합되는 상황에서 여기에 배제된 국가들은 정치적·경제적으로 대응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EU의 경우 역사적으로 장기간의 통합 과정을 거쳐 왔지만, NAFTA의 출범은 미국 시장에 주로 수출하던 국가들에게 중대한 도전이었다. NAFTA가 기술, 자본, 시장을 가진 미국과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한 멕시코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에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하던 국가들은 이에 맞서 대응을 하게 되었다.

둘째, 다자주의의 부진과 자유화 욕구 증대에 있다.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세계 경제는 성장했으나 국가 간 격차는 계속되었다. 사실 1960년대 이후 진행된 세계화 과정에서는 과거 후진국이었던 동아시아 일부 국가의 소득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아프리카나 중남미의 대부분 국가들의 실질소득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발전에 따른 환경 파괴, 노동권익의 저하 등에 대한 반발과 함께 반세계화를 촉발시켰고, 1990년대 말 WTO 체제의 기능 저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독자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하게 되었고, 이는 FTA로 나타나게 되었다.

셋째, 직접투자 유치의 중요성에 있다.

7) 박변순 외 4인,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pp.22~25.

8)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지역국가인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 사이에 체결(1992년)된 자유무역협정이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개도국들은 경제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FTA는 자본 축적, 기술이전, 고용 창출, 수출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발전 단계가 낮은 국가들에게 특히 선호되었다. 1980년대 이전까지 중남미의 사례를 들어 FTA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개도국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의 동아시아 성장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세계 개도국의 인식을 변화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 FTA는 관세인하를 통한 무역확대가 주목적이었으나, WTO 발족 이후 탄생한 FTA는 투자 유치 및 경제 개혁 등 동태적 효과를 중시하고 있다.

FTA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부문별 협정, 기능적 협정, 포괄적 협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부문별 협정- 협정대상국들이 어떤 특정 산업이나 상품 교역에 대하여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기능적 협정- 정부조달, 무역관련 투자, 분쟁해결절차 등 특정한 제도에 대한 국가간 협정을 의미한다.
- ③ 포괄적 협정- 모든 분야의 상품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내지 철폐하며, 투자 및 서비스, 지적 재산권 분야 등에 대한 교역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FTA나 RTA는 체결국간 관세 및 비관세부문의 상호특혜를 부여하므로 비체결국에 대한 차별적 무역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FTA는 GATT와 WTO의 다자주의 무역체제의 최혜국 대우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세계무역의 자유화는 본래 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을 통해 추진돼 왔다. 하지만 각국 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자 주요 무역국들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상이 아닌 상대국을 직접 지정해 양국 간에라도 자유무역을 실현하자고 추진하게 되었던바 이것이 FTA이다.

FTA와 관련된 WTO 국제규범을 살펴보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토록

규정하고 있다. 즉, 회원국의 생산제품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서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정들이 더 높거나 제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⁹⁾

FTA는 협정을 맺은 회원국들 상호간에 관세를 포함한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자유무역을 실시하지만, 회원국들이 역외 비회원국들에 대하여는 회원국들 나름의 무역보호수준(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유지하게 된다.¹⁰⁾ 이러한 FTA는 1960년대에 형성된 EFTA¹¹⁾를 시작으로 볼 수 있으며, 1994년에 출범한 NAFTA는 규범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자유무역협정이라 할 수 있다.

FTA의 유형은 다음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관 또는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범주에 속하는 FTA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9) 김세영·신상식, 「FTA확산과 한국의 대응」, 두남출판사, 2003, pp.21~25.
10) 김봉환,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인텔에듀케이션, 2004, p.10.
11)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4개국이 가입한 유럽자유무역연합이다.

〈표 2-1〉 FTA의 유형분류

기관 및 학자	분 류
UN	①장기무역협정 및 계약 ②관세율의 특혜적 적용 ③수량제한의 특혜적 적용 ④Sector간의 통합 ⑤자유무역지역 ⑥관세동맹 ⑦경제동맹
J. Tinbergen	①수량제한의 특혜적 적용 ②부분적 통합 ③자유무역지역 ④관세동맹 ⑤경제동맹
B. Balassa	①자유무역지역 ②관세동맹 ③공동시장 ④경제동맹 ⑤완전경제통합
Alim Elagaraa	①자유무역지역 ②관세동맹 ③공동시장 ④완전한 경제동맹 ⑤완전한 정치적 통합
S.P. Magee	①자유무역지역 ②관세동맹 ③공동시장 ④완전한 경제통합
M.Chacholiades	①부문별특혜무역협정 ②자유무역지역 ③관세동맹 ④공동시장 ⑤경제동맹

자료: 배기형,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한국의 선택」, 문음사, 1993, pp.15~16.을 참조하여 재정리함.

그러나 일반적으로 FTA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B.Balassa¹²⁾의 분류기준 즉,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결합 정도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¹³⁾

다음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FTA의 발전단계별 특징을 보면, 지역통합협정의 가장 초보 단계가 체약국 사이의 교역에 관세를 철폐하

12) B. Balassa,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61, pp.1~5.

13) 김세영, 전제서, pp.35~36.

는 자유무역협정이며, 여기서 더 발전된 형태가 관세동맹(customs union)이다. 관세동맹의 가장 큰 특징은 FTA가 회원국에 대한 대외적 독립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 공동의 대외 관세를 도입하게 된다.

그리고 공동시장(common market)은 상품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역내교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각 회원국들은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되고 있는 지역경제통합 형태를 말한다.

다음단계인 경제동맹(economic union)은 회원국 사이에 재정정책, 금융정책, 사회정책 등 모든 경제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발전된 경제통합 형태를 말한다. 즉, 경제동맹에서는 이러한 경제정책들을 상호 협조하에 실시하게 되며, 더 나아가 화폐까지 단일화한다면 완전한 형태의 경제동맹 체제를 갖추게 된다 할 것이다.

마지막 단계인 완전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이란 역내 경제정책의 통일을 전제로 하며, 각 회원국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초국가적 기구의 설립을 통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의 통합까지도 수반하는 경제통합을 의미한다.¹⁴⁾

14) 김세영, 전계서, p.42.

〈표 2-2〉 FTA의 발전 단계별 특징

단 계	특 징
제1단계 자유무역지역 (FTA)	-통합에 참가한 각 회원국에는 상품이동에 대한 일체의 무역제한 조치를 철폐하여 역내에서는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한편, 역외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인 관세정책 및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형태. 예: NAFTA, EFTA 등
제2단계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의 단계에서 회원국 상호간에는 상품의 자유이동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역외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공통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형태. 예: 베네룩스 관세동맹
제3단계 공동시장	-회원국 상호간에는 재화뿐만 아니라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이 보장되며, 역외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국이 공동의 관세를 채택하는 형태. 예: EEC, CACM, CCM, ANCOM 등
4단계 경제동맹	-각 회원국간의 경제정책을 조정하여 공동경제정책을 취하는 경제공동체. 예: EC
5단계 완전경제통합	-회원국 상호간에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하여 그 기구로 하여금 각 가맹국의 모든 사회, 경제정책을 조정, 통합, 관리하는 형태. 예: EU

자료: 신경환·박종수, 「국제통상의 이해」, 두남출판사, 1999, p.88.

2. FTA의 대상범위 및 법적근거

FTA의 대상범위는 체약국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칠레가 최근 체결한 NAFTA를 보면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데, 후진국간의 협정은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치중하고 있다. 그

러나 최근 FTA는 점차 그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정부조달·경쟁정책·환경·노동기준 등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 FTA인 NAFTA의 구성요소를 보면, 관세 및 비관세장벽·원산지 규정·통관절차 등으로 이루어진 상품교역 분야와 투자 및 서비스교역 분야, 표준 및 검토회위원회 등 기타분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관세철폐, 수량제한금지, 세이프가드조치, 반덤핑·상쇄관세, 원산지규제, 관세평가 등이다.¹⁵⁾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MFN)¹⁶⁾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 ①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 된다.
- ②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 내(원칙적으로 10년 이내)에 철폐하여야 한다.
- ③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된다.

상품분야는 다음 <표 2-3>에서와 같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4조, 서비스분야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5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5) 이재기, 「세계화·WTO·FTA 포커스」, 한울출판사, 2005, pp.194~195.

16) 최혜국 대우(MFN, 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통상·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원칙으로 GATT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표 2-3〉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다자주의 규정

	GATT 제24조	양해규정	허용조항	GATS 제5조
공식 명칭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 24조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Article XXIV)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XIV of the GATT 1994)	개발도상국의 우호적인 대우, 상호주의, 전면적인 참여에 관한 결정 (Decision on Differential and Most Favorable Treatment,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5조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Article V)
성격	· 상품무역에 있어서의 지역무역협정 관련규정 · 지역무역협정관련 다자주의 규정의 기초 ·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대한 예외 설정	· GATT 제 24조의 명확한 해석을 위한 보완 규정 · GATT 제24조 규정에 대한 해석기준과 한계 제시	·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우대하기 위한 지역무역협정 관련규정 · 개발도상국의 지역무역협정체결에 대한 허용요건의 신축성 부여	· 서비스무역에 있어서의 지역무역협정 관련 규정 · 서비스 무역에 관한 GATT 제24조와 유사한 체제의 규정
특징	· 관세동맹과 자유무역협정 또는 이를 위한 잠정협정의 구분 · GATT 1947의 일부	· GATT 1947의 조문해석에 관한 7개의 양해 중 일부 ·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GATT1994의 일부로 등장	· 수권조항 또는 권능부여조항이라고도 함 · 1979년 도교라운드에서 합의	· 관세동맹과 자유무역협정, 잠정협정을 구분하지 않음 ·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WTO 체제의 출범과 함께 등장

자료: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인텔에듀케이션, 2005, pp.43~45.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리고 FTA를 체결하게 되면 GATT 제24조 7항에 따라, 체결 당사국은 즉시 WTO 상품무역위원회(Council for Trade in Goods: CTG)에 통보해야 하고, 잠정협력과 관련하여 최초에 제출한 계획 또는 일정에 실질적인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도 통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FTA의 대상국 선정동기와 기대효과

(1) FTA 대상국의 선정동기

FTA를 체결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고려할 점은 경제적 이익이라 할 수 있다. 무역창출효과 및 투자의 확대 가능성, 국가 사이의 산업구조적인 보완성, 지역거점으로서의 역할, 시장규모 등을 기준으로 FTA의 경제적 이익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치적·외교적 동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동북아시아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과 동북아시아의 지역주의 논의는 당사국의 경제적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한반도의 정치적 안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¹⁷⁾

그 다음은 국내의 취약산업이나 산업구조 조정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농업분야 등 취약산업의 개방에 대한 부담이 큰 국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FTA를 추진해야 하고, 이러한 부담이 적은 국가를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FTA를 체

17)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인텔에듀케이션, 2005, p.158.

결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FTA를 체결함에 있어서 대상국을 선정하게 되는 동기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2-4>와 같다.

<표 2-4> FTA 대상국 선정 동기

경제적 동기	경제적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규모, 산업구조의 보완 · 경쟁 · FDI의 증가(수직적, 수평적) · 무역장애요인(거리, 통상마찰, 관세 및 비관세장벽) · 기술이전(상대국의 기술수준, 기술흡수능력) · 경쟁력 제고 · 거대시장접근의 교두보
	경제적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조정비용(민감 산업, 노동이동) · 기회비용 · 행정비용
정치 · 외교적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안보 및 외교적 필요성 · 자원(석유 등)의 안정적 확보
전략적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verage 활용 가능성
기타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제도 개선 · 대상국의 관심

자료: 이재기, 「FTA의 이해」, 한울출판사, 2005. p.210.

(2) FTA의 기대 효과

FTA를 통하여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다음 <표 2-5>에서와 같이 단기적 효과와 중장기적 효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단기적 효과는 정태적인 것으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이며, 중 · 장기적 효과로는 동태적인 것으로 규모의 경제효과, 경쟁촉진효과, 비용절감효과 및 해외직접투자의 증가효과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 기타효과로 정치 · 외교적 효과를 들 수 있다.

<표 2-5>

FTA의 경제적 효과

지역 무역 협정의 효과	공정적 효과	단기적 효과	1. 역내국 경제성장으로 인한 무역 증가의 효과	무역창출 효과	· 국내 상품 대신에 상대적으로 싸진 역내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무역창출
		중·장기적 효과	1. 역내국 경제성장으로 인한 무역 증가의 효과	역내국의 규모경제 달성	· 시장 확대, 규제의 표준화, 시장접근의 안정 등에 의한 실현
				경쟁촉진 효과	· 역내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용이하게 되어 역내 수입품과의 경쟁강화
			2. 비용절감효과	· 기술력, 산업network의 이용가능성 증대	
				3. 투자효과	· 역내국의 규제 장벽 기준 등의 표준화 및 간소화 등으로 인한 수출 비용의 감소
		4. 역내경제의 구조 조정 효과	· 회원국으로부터 역내투자증가		
	부정적 효과	단기적 효과	5. 무역전환 효과	·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진 역내국의 수입으로 전환 · 역내수입이 세계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품의 경우,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로 해당상품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교역 조건 악화	
		기타	6. 정치·외교적 효과	· 정치·외교적 연대감 강화	

자료: 배기형,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한국의 선택」, 문음사, 1993, p.38.

① 무역 창출 효과 - FTA의 체결로 인하여 단시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교역으로 인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한 Viner¹⁸⁾에 따르면 교역에 대한 긍정적 효과로는 무역창출 효과이다.

무역창출효과는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효과로 역내관세의 철폐로 인하여 회원국들이 높은 가격의 국산재화를 낮은 가격의 회원국내의 외국재화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¹⁹⁾ 역내국들이 관세인하로 비교우위를 갖게 되는 재화를 중심으로 상호교역을 하게 되고, 역내국들은 비싼 국산재화를 값싼 역내상품으로 대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각 회원국 내의 생산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비교우위 산업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게 되고, 전 세계의 후생이 증대되는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무역창출을 통해 각 역내국의 비교우위상품의 시장이 확대됨과 동시에, 동 상품의 생산이 증가하고 수출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무역 전환 효과 - 무역전환효과란 저비용 생산의 비회원국에서의 수입을 역내 관세의 인하 및 철폐로 고비용 생산의 역내 회원국 상품으로 대체하는 것이며, 자유무역협정 이전에는 비회원국의 재화가 비교우위에 있었던 것이 협정 체결 후, 역내 회원국간의 교역에 대한 관세가 없어짐으로써 역내 회원국의 재화가 비교우위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²⁰⁾

이러한 분석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정태적이며, 부분적인 단점이 있지만, 경제통합으로 인해 예상할 수 있는 무역효과를 효율성 측면에서 쉽고 명료하게 설명하는 장점이 있다.

무역전환효과는 역내관세 철폐로 인하여 저가의 지역경제통합지역 이외의 재화가 고가격의 역내상품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관세부과 이전의 가격을 비교해 볼 때 역외국 재화가 더 저렴하

18) J. Viner, *The Customs Union Issue*, New York: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50, Chap.4.

19) 이재기, 전제서, p.197.

20) 홍정숙, 「한국·일본 FTA의 경제적 효과와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05, p.13.

다는 것이므로 저렴한 역외상품을 값비싼 역내상품으로 대체하게 되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

Viner의 연구는 최종재화에 대한 관세철폐로 인한 생산 활동의 효율성 변화에 초점을 두고 무역창출효과를 후생증가요인<정(+)>의 효과, 무역 전환효과를 후생감소요인<부(-)>의 효과<정(+)>으로 구분하여 FTA의 타당성을 무역창출의 이익이 무역전환의 불이익을 초과할 경우에 두고 있다.²¹⁾

③ 중·장기 동태적 효과 - 경제통합으로 인한 효과가 단시간 내에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나타날 수 있는 동태적인 효과를 지칭하며, 여기에는 규모의 경제 및 경쟁촉진,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²²⁾

첫째, 규모의 경제 및 경쟁 촉진효과

FTA로 인한 시장의 확대로 역내에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그러한 가운데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간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요구하는 힘이 역내경제에 동태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²³⁾

둘째, 해외직접투자의 증가효과

지역경제통합 내 재화에 대한 무역장벽 철폐는 무역효과뿐만 아니라, 역내외국은 막론하고 세계 각국 기업의 생산 활동을 역내로 유인하는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 즉, 역내 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 또는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²⁴⁾ 즉,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역내 무역장벽의 철폐는 기업의 역내 경제활동비용을 낮아지게 함으로써, 기업의 이윤창출 기회를 확대시킬 것이다.

21) 이재기, 전계서, pp.143~144.

22) 홍정숙, 전계서, p.16.

23) 김세영·신상식, 전계서, p.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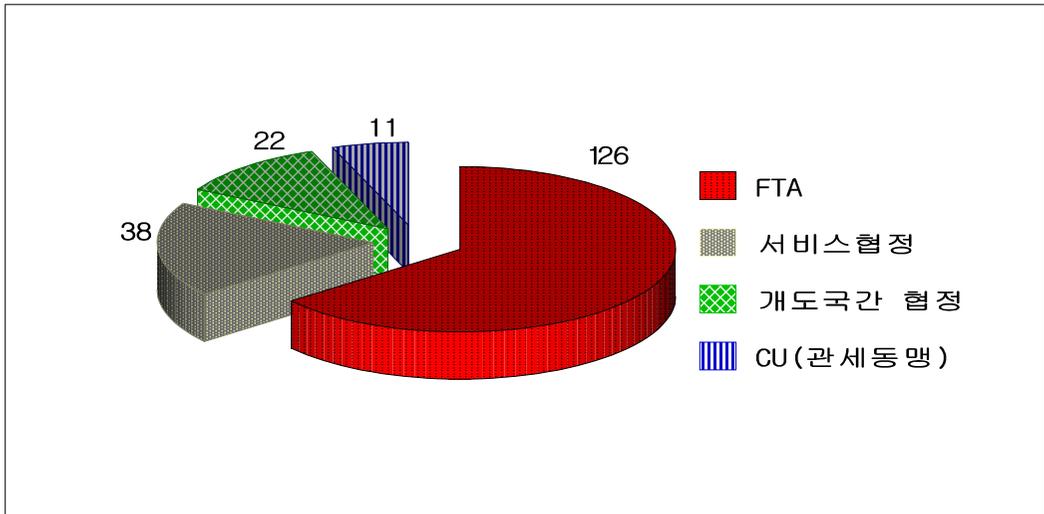
24) 김세영·신상식, 상계서, p.50.

제2절 FTA의 추진동향

1. 유형별 RTA 체결현황

2006년 7월 현재 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RTA는 총 197건으로 다음 <그림 2-1>에서와 같이, 이 중 FTA가 12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협정이 38건이고, 개도국간 협정이 22건이며, 관세동맹이 1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RTA 총 197건 중 GATT에 통보된 RTA가 50건이었고, WTO에 통보된 RTA가 147건이었다.²⁵⁾



<그림 2-1> 유형별 RTA 체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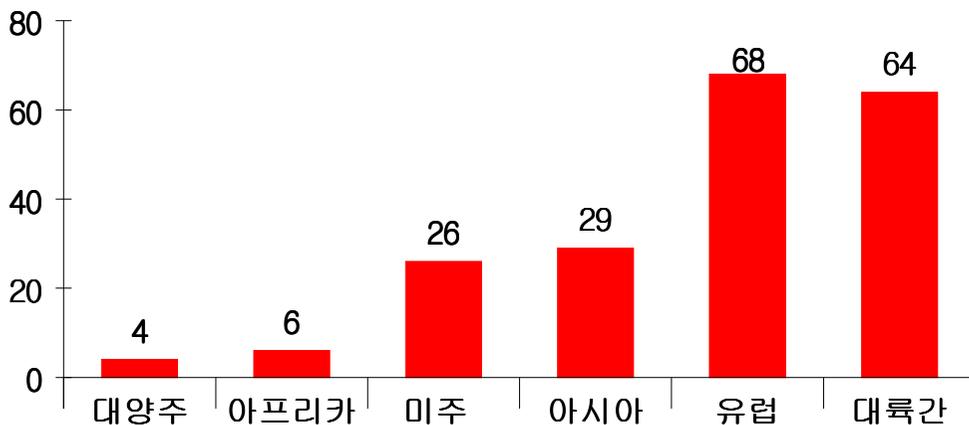
자료: WTO (www.wto.org).

2. 지역별, 시기별 RTA 체결현황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지역별로 살펴볼 때, 다음 <그림 2-2>에서와 같

25) WTO (<http://www.wto.org>).

이 유럽지역에서 68건을 기록해 가장 많은 지역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다음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29건, 미주 지역에서 26건, 그리고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이 각각 6건과 4건을 기록하고 있다. 대륙간에 있어서도 64건으로 이제 FTA는 인접국가에 국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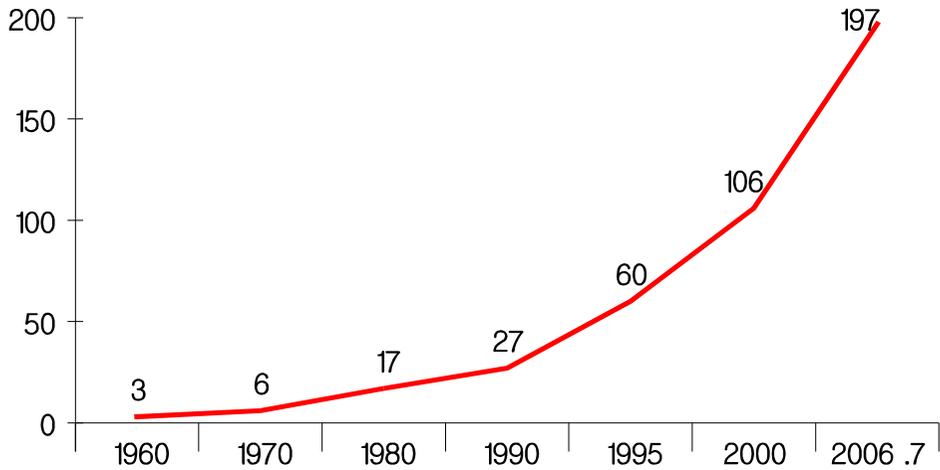


<그림 2-2> 대륙별 RTA 체결 현황

자료: WTO(<http://www.wto.org>)

그리고 197개의 RTA를 시기별로 지역무역협정체결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2-3>에서와 같이 지역경제협정은 지역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197건의 협정 중 70%에 해당하는 137건이 1990년대 후반에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70년대 이전 6개, 80년대 17개, 90년대 60개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 이후 106개가 체결되어 2006년 7월 현재 197개가 체결되어 있다. 이것을 볼 때 최근에 와서 RTA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3> 시기별 RTA 체결현황

자료: WTO(<http://www.wto.org>)

3. 주요국의 FTA 추진동향

(1) 일본의 FTA 추진동향

일본은 아시아 지역과의 FTA를 추진함과 동시에 2004년 타결된 멕시코에 이어 칠레와의 FTA 공동연구에 착수하는 등,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ASEAN과의 FTA 협상 진행과는 별도로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와의 FTA를 타결 지었으며,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2006년 중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고, 태국과는 2006년 4월에 공식 서명하여 9월에 발효되었다. 일본의 FTA추진현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2-6>와 같다.

<표 2-6> 일본의 FTA 추진 현황

2005년 현재

	기 체 결	협상 중	검토 중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02. 1 체결) · 멕시코('04. 3 타결) · 필리핀('04. 11 타결) · 태국('05. 8 타결) · 말레이시아('05. 5 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03. 12 개시) · ASEAN('05. 4개시) · 인도네시아('05. 7개시) · 칠레('06. 2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05. 11 공동 연구 개시) · 캐나다('05. 12 공동 연구 개시) · 대만, 베트남, 호주

자료: KITA(<http://www.kita.net>)

(2) EU의 FTA 추진동향

EU는 지역주의의 발원지이지만, 유럽국가와 비유럽국가와는 차별화된 FTA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즉, 유럽국가와는 FTA 수준을 넘어 유럽의 평화와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경제적 공동체 완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역외국가와는 70년대부터 양자간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역외국가인 칠레, 멕시코 등 중남미국가, MERCOSUR, 싱가포르 등과 FTA를 체결 혹은 추진 중에 있다. EU의 FTA 추진현황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2-7>)과 같다.

<표 2-7> EU의 FTA 추진 현황

2005년 현재

	기 체 결	협상 중	검토 중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25개 회원국) · EFTA · 알제리 · 요르단 · 멕시코 · 모로코 · 터어키 · 칠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RCOSUR · GC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EAN · 대만, · 싱가포르 · CAN · 한국

자료: KITA(<http://www.kita.net>)

(3) EFTA의 FTA 추진동향

EU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공화국 등 4개국으로 구성된 EFTA는 EU의 확대에 자극받아 중동구 유럽, 중남미, 지중해 연안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EFTA는 1992년 최초의 FTA를 터키와 체결한 이후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중동구 유럽, 발틱연안 국가, 아프리카 등으로 점차 그 체결 대상국을 확대해 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유럽대륙을 넘어 주요 교역국인 멕시코('00), 싱가포르('02), 칠레('03) 등과 FTA를 체결했으며, 우리나라와도 2005년 7월 협상을 타결(06. 9발효), EFTA의 FTA 추진현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2-8>과 같다.

<표 2-8> EFTA의 FTA 추진 현황

2005년 현재

	기 결 체	협상 중	검토 중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25개국) · 터키('91) · 이스라엘('92) · 폴란드('92) · 루마니아('92) · 헝가리('93) · 불가리아('93) · 체코('93) · 슬로바키아('93) · 슬로베니아('95) · 에스토니아('95) · 리투아니아('95) · 모로코('97) · 멕시코('00) · 요르단('01) · 싱가포르('02) · 칠레('03) · 튀니지('04. 12 서명) · SACU('05. 6 타결) · 한국('06. 9 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집트 · 레바논 · 캐나다 · 남아공 · 알바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CC · ASEAN · MERCOSUR · 알제리 · 태국

자료: KITA(<http://www.kita.net>)

(4) 호주의 FTA 추진동향

호주는 기본적으로 WTO 다자간협상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나, 양자간 또는 지역간 무역협정을 통해 다자간 무역협정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호주는 거대유망시장인 동남아시아 및 동북아시아 경제권과의 연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자국의 주력품목인 광물자원과 농산물 및 식품 등의 시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ASEAN 국가 및 중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즉, 중국, 말레이시아와는 2005년 5월 협상을 개시했으며, 뉴질랜드-ASEAN과는 2005년 2월 협상을 개시하였다. 호주의 FTA 추진 현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2-9>와 같다.

<표 2-9> 호주의 FTA 추진 동향

2005년 현재

	기 체 결	협상 중	검토 중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푸아뉴기니('77) · 뉴질랜드('83) · 싱가포르('02) · 태국('03.10 타결) · 미국('04.2 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E('05. 3 개시) · 중국('05. 5 개시) · 말레이시아('05. 5 개시) · 뉴질랜드-ASEAN ('05. 2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 멕시코 · 한국

자료: KITA(<http://www.kita.net>)

(5) 멕시코의 FTA 추진동향

현재 멕시코의 FTA 타결국 수는 무려 43개국에 달하며, 그로 인해 경제개방과 개혁정책으로 교역과 외국인 투자는 급성장했지만, 경제성장률과 고용여건은 정체되거나 악화되었다.

이에 2005년 10월 대외무역회의에서 멕시코 정부와 민간 부문은 2003년 11월에 발표된 신규 FTA 체결 일시 중단이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을 재확인했다.

최근 당분간 현재 FTA를 추진 중인 국가 이외에 새로운 협상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멕시코의 FTA 추진현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2-10>와 같다.

<표 2-10> 멕시코의 FTA 추진동향

2005년 현재

	기 체 결	협상 중	검토 중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레('92) · NAFTA('94) ·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콜롬비아 및 베네수엘라('95) · 니카라과('98) · 엘살바돌 과테말라 및 온두라스('01) · 이스라엘('00) · EU 25개국('00) · EFTA('00) · 우루과이('03) · 일본('04. 3 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A · 싱가포르 · MERCOSUR · 아르헨티나 · 한국('06. 2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루 · 뉴질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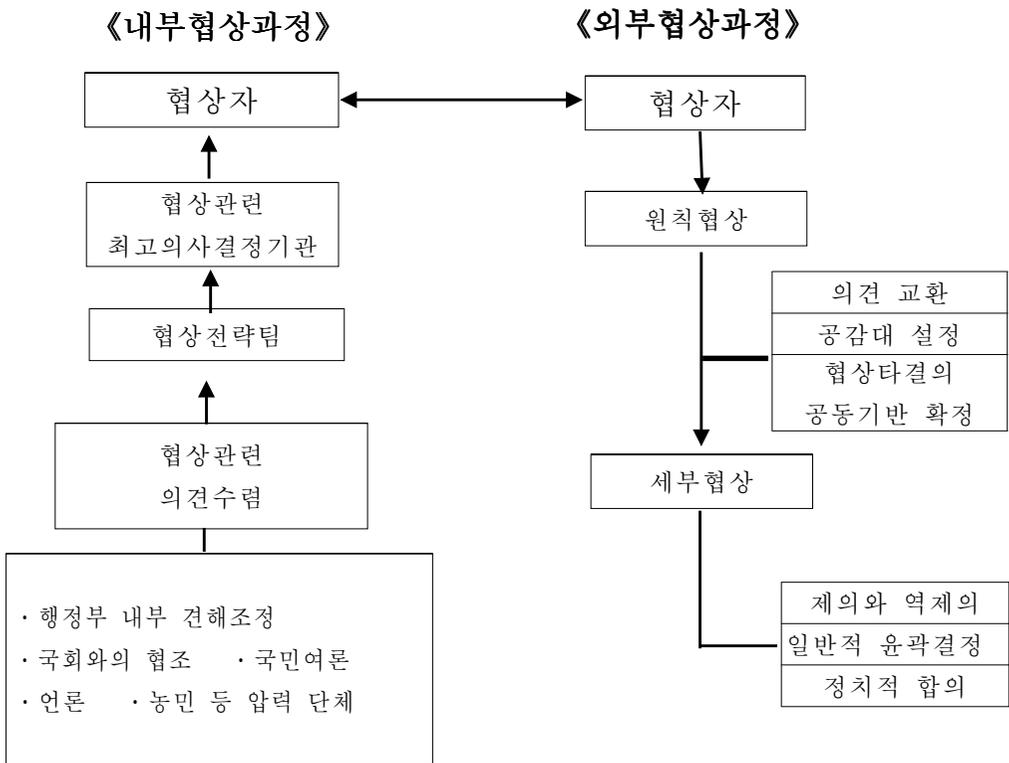
자료: KITA(<http://www.kita.net>)

제3절 FTA의 협상전략

1. FTA 협상과정

국제통상협상이란 협상에 참여하는 양 당사자가 협상의 타결(혹은 협상의 대상)에 대한 서로의 기대를 일치시켜 가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협상의 본질은 협상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협상의 이익을 나누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그 과정에서 협상의 당사자에게 돌아오는 몫

을 결정하는 능력을 협상력 (bargaining power)이 정의되고 있다. 협상 참여자의 몫을 결정하는 과정은 협상당사자들이 자신 혹은 상대방이 각각 협상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달려있다. 즉,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상대방의 자신에 대한, 혹은 자신의 상대방에 대한 게임에서의 믿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협상력이란 협상에 참여하는 상대방의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국제협상은 다음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상 상대국의 협상 대표들이 갖게 되는 외부협상과 협상국 내부에서 협상과 관련하여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지시하고, 조직 또는 집단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내부협상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4> FTA 내부협상 및 외부협상의 과정

자료 : 김기홍, 「한국인은 왜 항상 협상에서 지는가?」 굿인포메이션, 2002, p.268. 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2. 내부협상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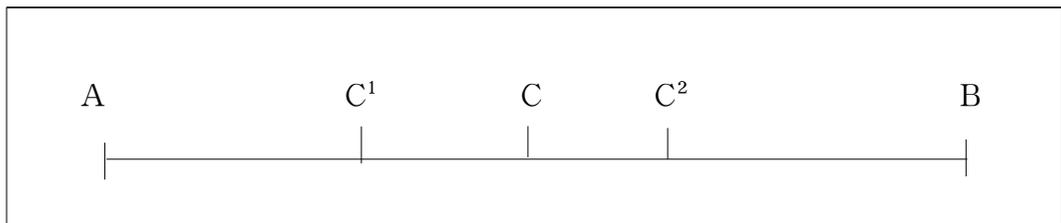
FTA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협상가가 만나서 FTA에 대한 양국의 쟁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외부협상이라면, FTA의 각 쟁점에 대해서 두 나라가 제각기 국내에서 쟁점에 대한 입장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내부협상이다. 즉, 국가 간의 외부협상이란 협상 상대국의 협상가들 사이에서 진행되는 외형적인 협상을 의미하고, 내부협상이란 이런 협상을 진행하기 전에 그 협상과 관련된 쟁점을 논의하는 국가내부의 의견수렴과정 혹은 입장결정과정을 의미한다.

국가 간의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협상국의 내부에서 협상과 관련된 쟁점들의 입장을 결정하거나 협상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내부협상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든 국가 간의 협상은 내부협상과 외부협상의 이원적 구조를 가지는 이원적 게임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협상에 있어서 협상력이란, 실제 외부협상에 임하는 그 나라 협상가가 가지는 협상력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실상 이런 협상력은 내부협상과정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즉 협상의 결과는 협상력에 따라 달라지며 협상력은 내부협상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협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협상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쟁점들의 입장을 결정하거나 협상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떤 국가가 내부협상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 주도적 협상을 진행한다면 자칫 국론분열로 국력이 소모되고, 협상자들은 대외적 협상에서도 강한 협상력을 발휘하기 힘들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내부협상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먼저 행정부 내부의 견해 조정과 국회와의 협조체계가 이루어진 후 국민 공감대 형성과 피해 예상분야에 대한 보상과 대책마련, 이해관계 집단에 대한 설득 등의 내부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3. 외부협상전략

R. Keohane은 국제협상을 ‘정책의 조정을 통해 다수의 개인이나 조직의 행동을 서로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R. Putnam은 ‘윈셋(win-set)’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였다. 그가 말하는 윈셋이란 첫째로 “주어진 환경에서 국내적 기준을 얻을 수 있는 모든 합의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따져 합의가 가능하려면 양 당사자의 윈셋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고, “윈셋이 클수록 협상의 타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둘째는 “윈셋의 상대적 크기가 합의에 따르는 이득의 분배를 결정짓는다.”²⁶⁾는 것이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그림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에서 B까지의 선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공동이익의 전체 크기를 나타내며, 만일 C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AC와 BC는 각 당사자들의 이익 크기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주장이나 상황 때문에 한 당사자가 취할 최소의 몫을 C^1 , 같은 이유로 다른 상대방이 취할 최소의 몫은 C^2 로 하면 한 당사자의 윈셋은 BC^1 이며, 다른 상대방은 AC^2 가 되어 양 당사자의 윈셋이 겹치는 부분인 C^1C^2 는 합의가능영역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조건의 같은 한 윈셋이 커지면 커질수록 합의영역은 넓어지며 합의의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림 2-5> 윈셋의 크기 및 협상의 가능성

자료: 김태현 외 2인, 「외교와 정치」, 오름, 1998, p.89.

26) 김태현 외 2인, 「외교와 정치」, 오름, 1998, p.88.

물론 원셋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국내 여러 집단의 이해 및 제후 관계와 국내제도 그리고 국제교섭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실무 당사자와 전략 등이다. 또한 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먼저 자국의 원셋을 축소시키는 전략처럼 현안의 이슈를 정치쟁점화 시키면서 여론을 강경하게 몰고 가거나 또는 분열시키면서 'tying-hands' 식으로 원셋을 축소하거나, '이면보상'과 같은 방법으로 원셋을 확대하는 'cutting slack' 전략이 있다. 한편 상대방의 원셋을 크게 하는 전략인 소위 '상승적 연계' 전략이나 이슈에 대한 기대나 이미지를 바꾸는 'reverberation' 전략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²⁷⁾

그렇게 되면 C^1 은 B방향으로 이동되어, B국은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B국의 여론 악화로 C^2 가 A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A국은 B국의 불만 해소를 위한 이면보상과 같은 방법으로 축소된 원셋을 다시 확대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발목잡히기식 전략은 약소국 A에게는 불리한 전략이 될 것이다. 메아리식 전략이란 A국 정부가 가령 영화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크린 쿼터 축소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C^1 을 A로 이동시키고, B국에 대해서도 C^2 를 B쪽으로 이동하도록 하여 원셋을 확대토록 유도하는 것이다. 예컨대 A국의 입장에서 AC의 크기가 BC의 크기보다 크게 하는 것이 유리하고, B국의 입장에서는 BC를 AC보다 크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A국이 약소국이고 B국이 상대적 강대국일 때 A국은 AC의 크기를 BC보다 크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A국의 협상전략은 AC와 BC의 크기가 같아지도록 협상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27) 김성호, 「국제통상협상」, 두남, 2004, p.185.

제3장 한·미 FTA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 분석

제1절 한·미 FTA의 의의

1. 한·미 FTA의 출범 배경

한·미 간 FTA 추진에 대해서 양국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으나 비공식적인 협의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한·미 FTA 체결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²⁸⁾ 동 보고서는 동아시아지역 국가 중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국가로 한국, 싱가포르, 타이완을 꼽았으며, 이들 국가 중 싱가포르는 이미 무역자유화를 실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FTA를 체결해도 실익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싱가포르는 2000년에 양국간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이를 위해 2001년부터 협상에 돌입하였다. 이는 미국이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서비스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동아시아 진출시 거점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 보고서는 타이완과의 FTA는 양국간 미수교로 협상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그리고 이 세 국가 중에서 한국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적절한 FTA 대상국가임을 밝혔으나 당시 한국의 높은 반미감정으로 양국 간 협정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였다.

동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미국과의 FTA 체결과 관련된 연구가 국내에서도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상당수 이루어졌으나, 국내에서 미국과의 FTA 체결에 관한 논의는 오래 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이는 당시 미국이 한국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압력수단으로 한·미 FTA를 이용한다는

28)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조사본부 FTA팀, 「한·미 FTA 쟁점사항과 대응과제」, 2006. p.5.

인식 때문에 실제 1990년대 접어들면서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 양허안에 대한 논란이 거세어지자 미국과의 FTA체결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 우리나라가 칠레와 FTA 협상이 진전되자 미국측은 한·미 FTA에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2001년 4월 26일 한·미 간 FTA 체결 추진의 배경은 1997년 말 한국의 금융위기로 인한 한국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과 아울러 한·미 간 무역규모가 연간 약 700억불로서 한국이 미국의 제6대 무역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양국 간 무역마찰이 증대되고 있고, 양국의 국내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상호 자유무역의 필요성이 성숙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미 간 교역규모 비교

한국의 대미 교역규모는 다음 <표 3-1>에서와 같이 2005년 현재 수출 413억 달러, 수입 306억 달러, 무역수지흑자 107억 달러(자료)이며, 무역의존비중은 수출 14.5%, 수입 11.7%로 중국·일본에 이어 3위의 규모이다. 반대로 미국의 한국교역 비중은 수출 3.1%, 수입 2.6%로 캐나다·중국·멕시코·일본 등에 이어 7위이다. 양국의 교역규모는 이처럼 그 비중이 큰 편이며, 이는 한·미FTA가 다른 FTA협상보다 우선해서 추진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표 3-1> 대미 수출입 규모 (억달러, %)

연도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수지(증가율)
2002	32,780(5.0)	23,009(2.8)	9,772(10.6)
2003	34,219(4.4)	24,814(7.8)	9,405(-3.7)
2004	42,849(25.2)	28,783(16.0)	14,067(49.5)
2005	41,343(-3.5)	30,586(6.3)	10,757(-23.5)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대미 수출에 있어서 상위종목인 자동차 및 부품이(26.1%), 무선통신기기(14.1%), 반도체(8.7%), 석유제품(5.2%), 컴퓨터(3.3%), 의료(2.5%), 철강판(1.9%) 등이다. FTA 관세율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선박·철강·반도체 등을 제외한다면, 수출입 규모와 관세율 격차를 감안한 제조업부문의 실질적인 유력 종목은 미국의 상대적인 고관세율 품목인 농수산(가공)물, 섬유/의료, 자동차 및 부품, 가죽/신발류로 압축된다.²⁹⁾ 반대로 관세율 인하로 한국에 수입될 미국측 품목은 거의 전 종목이다. 이 가운데 무역규모상의 상위 종목인 반도체(18.6%), 반도체장비(7.4%), 항공기부품(5.3%), 계측제어 분석기(3.8%), 컴퓨터(2.5%), 정밀 화학원료(2.4%) 등, 그리고 관세율 상으로 한국의 고관세율 품목인 섬유, 의료, 농수산물, 석유류, 기계, 전자류 항목이 주된 관심 종목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한국에 대해 제조업 부문에서는 무역적자를 서비스와 농산물 부문에서는 무역흑자를 나타내고 있다.³⁰⁾

한·미 양국은 통신기기, 컴퓨터와 반도체 등에서만 경쟁 관계에 있으며, 이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상호보완적 무역 구조를 보이고 있다. 농산물과 서비스 부문에서 나타나는 한·미간 교역 패턴은 미국이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양국이 서로 다른 상품들을 교환하고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식물류, 의류, 신발, 가전제품 등 경공업제품 등을 주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한국은 철강과 자동차 등 일부 중공업제품들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를 산업별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통해 살펴보면, 한국은 의류, 플라스틱제품, 가죽 및 고무제품, 철강, 통신기기, 사무용 및 전기기계, 운송장비 등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식품 및 담배류, 화학제품, 대부분의 기계류, 군수용품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29) 부산신발진흥센터, 신발산업 한국·미국 FTA 대응 세미나, pp.8~17.

30) 박변순 외 4인, 전계서, p.168.

3. 한·미 FTA 추진 중요성

세계 주요지역이 FTA를 통해 자유무역권을 형성하고 있는 실정에 맞추어 볼 때 FTA가 4건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고립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WTO 등 다자주의 무대에서도 지역 통합체들의 동일한 이해관계의 세계적 질서 하에 적절한 대응이 용이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이 NAFTA 설립 후, 멕시코의 대미수출은 급격히 증가했지만 한국의 대미수출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멕시코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또한 1990년 6%에서 2001년 11.5%로 급등한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내에 3.7%에서 3.1%로 하락하였다. 따라서 한·미 FTA의 체결이 필요하게 되었다.³¹⁾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FTA확산 추세에서도 소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이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였고, 아세안 전체와도 추진 중에 있어 아세안 시장 내 기계 및 전기전자, 정밀기기, 철강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미 FTA 체결은 중요하다 할 것이다.

한·미 FTA의 추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미 교역이 우리나라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이 413억 달러로 전체의 14.5%를 차지하며, 수입이 306억 달러로 1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005년 기준) 그러나 한미 교역비중은 계속 하락추세에 있는 반면, 한·중, 한·일 교역비중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미국은 2003년까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었으나, 2004년 중국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었으며, 2005년 현재는 중국, 일본에 이어 3번째 교역국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둘째, 특히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휴대폰, 반도체, 컴퓨터의 대미 수출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미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는 전년 동기 대비 13.9% 수출이 감소

31) 홍정숙, 전계서, pp.8~9.

했으며, 무선통신기기는 26.5%, 반도체 21.5%, 컴퓨터 28.7%의 수출하락세를 기록하였다.

<표 3-2>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 동향

(억달러, %)

품목명(MTI 3단위)	2004년	2005년
자동차	101.5 (20.7)	87.4 (-13.9)
무선통신기기	79.5 (46.7)	58.4 (-26.5)
반도체	46.2 (33.7)	36.3 (-21.5)
컴퓨터	19.2 (-10.1)	13.7 (-28.7)
의류	15.4 (-10.7)	10.5 (-32.2)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셋째, 미국은 멕시코, 캐나다 등 FTA 체결국과 역내 교역 비중을 늘리고 있으며, 중국의 대미 시장 진출 확대로 인해 우리의 대미 수출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1995년 미국 시장의 멕시코 점유율은 8.3%에서 2005년 10.2%로, 중국 점유율은 동기간 6.1%에서 14.6%로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1995년 3.2%에서 2005년 2.6%로 오히려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2005년도 미국의 교역 현황을 보면 수출은 8,92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10.5% 증가하였고, 수입은 16,746억 달러로 전년대비 13.7%를 기록하여 교역규모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도 큰 폭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다섯째, 안정적 미국수출시장 확대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정치 외교적 차원이나 전략적 차원에서도 한·미 FTA가 중요하고, 해외 직접투자를 촉진하는데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2절 한 · 미 FTA 추진현황 분석

1. 한 · 미 각국의 FTA 추진현황

(1) 미국의 FTA 추진현황

미국은 미주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세계적 무역자유화 촉진, 주요 우방과의 협력관계 강화 등을 목적으로 FTA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2001년 부시 대통령 취임 직후인 3월 에 발표한 ‘무역정책 아젠다(Trade Policy Agenda)’에서 FTA 중점추진을 천명하고, 2002년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³²⁾의 의회 승인 이후 FTA를 본격 추진하였고, 부시 1기 정부 하에서 칠레, 호주 등 10개국과 FTA를 성사시켰으며, 부시 2기 정부에서도 미주 대륙에서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범 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Americas, FTAA)³³⁾에 치중하는 한편, 지역적 다양성의 차원에서 유럽지역을 제외한 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지역의 국가들과 FTA를 추진 중에 있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FTA를 통해 미주대륙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함으로써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EU에 대응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DDA 협상이 중단됨에 따라 미국은 개방에 모범적인 거점국가들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경쟁적 자유화를 촉진시켜 나가려 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 요르단, 호주 등 외교 · 안보적으로 중요한 국가와의

32) 무역촉진권한은 (TPA)은 과거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으로 불리던 것으로 의회가 미 헌법상 의회 권한인 무역협정상권을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위임한 것(2002. 7~2007. 6)으로 의회는 내용에 대한 가부 결정권한만 갖고 협정내용을 수정하지 못함. 이는 행정부가 타국과 체결할 협정의 이행법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신속한 처리를 밟기 위한 것임.

33) 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Free Trade Area of Americas)는 북미 알래스카에서 남미 아르헨티나에 이르는 아메리카 대륙의 경제를 하나의 자유무역체제로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1994년 12월 쿠바를 제외한 미주 34개국 정상들이 미국의 마이애미에서 FTAA에 대한 정상선언문을 발표함.

FTA 체결을 통해 정치·안보적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연도별 FTA추진 현황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미국의 FTA 추진동향

발효시점	대상국	비 고
1985. 8. 19	이스라엘 (Free Trade Agreement)	-농산물 중심의 한시협정(ATAP : 2001년 12월 만료)에 대해 협상 중
1999. 1. 1	캐나다 (CUSFTA)	-NAFTA로 확대
1994. 1. 1	북미자유무역 지대 (NAFTA)	-캐나다, 미국, 멕시코
2001. 12. 17	요르단	-서비스,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 포함
2004. 1. 1	칠레	-서비스, 지적재산권, 규제투명성, 노동,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 포함
2004. 1. 1	싱가포르	-서비스, 지적재산권, 규제투명성, 노동,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 포함
2005. 1. 1	호주	-2004년 5월 협상완료 -캐나다와의 FTA 이후 미국이 거대선진국과 맺은 첫 FTA
협정서명 2004. 5. 28	중미자유무역 협정(CAFTA)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카) 포함 -도미니카공화국을 CAFTA에 포함하는 DR-CAFTA에 대한 의회 비준(2005. 7)
협정서명 2004. 6. 15	모로코	-2002년 4월 23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제의 -2004년 3월 타결 -2006년 1월 발효 예상
협정서명 2004. 9. 14	바레인	-2004년 5월 타결 -미국과 FTA를 맺은 네 번째 중동국가

타결 2005. 10. 3	오만	-동 FTA발효와 동시에 미국의 소비재, 산업재는 100%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며, 농산물은 87%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됨
	미주자유무역 지대(FTAA)	-1994년 12월 쿠바를 제외한 미주 34개국 정상들이 미국의 마이애미에서 FTAA에 대한 정상선언문을 발표 -2005년까지 협정체결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하고 협상 중
	남아프리카관 세동맹(SACU)	-2003년 6월 협상개시 -남아공,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레소토, 나미비아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GOA)의 성공을 위한 일환으로 개시
	파나마	-2004년 4월 협상개시
	안데안국가연 합 (ANCOM)	-2004년 6월 협상개시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태국	-2004년 7월 협상개시 -2005년 9월 5차 협상개최
	아랍에미레이 트연합	-2005년 3월 협상개시
계획 또는 검토 중	중동자유무역 지대 (MEFTA)	-2003년 4월 부시 대통령이 중동무역구상(METI) 발표, 2013년 출범목표
	기타	-한국, 말레이시아, 이집트, 스위스, ASEAN, 인도네시아, 대만, 우루과이,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필리핀 등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산업조사본부FTA팀, 「한·미FTA쟁점사항과 대응과제」, 2006, p.2.

(2) 한국의 FTA 추진 현황

한국은 무역자유화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비차별적이고 무역자유화의 범

위가 넓은 다자주의를 선호하였었다. 그러나 WTO의 DDA 협상이 지연되고 EU 및 NAFTA를 비롯한 지역주의가 세계무역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도 다자주의에 의존하던 무역정책에서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FTA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한국정부가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던 근본배경에는 산업구조 조정 및 통상체제의 선진화, 안정적 수출시장 확대, 경제적 우방의 확보 등을 지적할 수 있다. FTA 체결 경험이 없었던 한국의 취약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FTA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첫 FTA 대상국으로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는 칠레를 선정한 바 있다.

한국과 칠레는 1999년 12월부터 2000년말까지 네 차례의 협상을 개최하였으나 농산물의 개방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2001년 한 해 동안 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 2002년 들어 농산물 개방에 대한 칠레의 입장이 완화되어 2002년 8월 제5차 협상이 개최되었고, 농업개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3년간에 걸친 협상이 2002년 10월 타결되었다.³⁴⁾

한국은 현재 주요국인 미국, 유럽, 일본, 중국으로부터 다음 <표 3-4>에서와 같이 전문직, 교육, 통신, 금융 분야에 개방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에 와있다.

<표 3-4> 한국의 주요국 서비스시장 개방요구 분야

국가명	주요 내용
미국	전문직(의료·간호), 통신, 금융 분야
유럽	전문직(간호), 통신, 교육 분야
일본	전문직(의료·간호·건축), 교육, 통신
중국	전문직(의료), 방송, 육상운송, 에너지, 교육 등 전 분야
기타 개발 도상국	통신, 유통, 해운, 건설 분야

자료 : 이재기, 「FTA의 이해」, 한울출판사, 2005, p.15.

34) 이재기, 전계서, p.15.

2. 한·미 FTA 추진일정 및 내용

한·미 FTA의 추진은 다음 <표 3-5>에서와 같이 제1차 협상을 2006년 6월 5일부터 9일까지 워싱턴에서 분과별로 한·미 양측이 각각 제시한 협정문을 작성하고, 제2차 협상을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양허안 작성방법을 협의하였고, 양허안 교환은 8월 15일에 하였으며, 의약품 협상은 8월 21일부터 22일 협상하였다. 제3차 협상은 9월 6일부터 9일까지 시애틀에서 양허안과 유보안 협상을 하였고, 제4차 협상은 10월 23일 제주에서 하였으며, 제5차 협상은 12월에 워싱턴에서 협상을 갖기로 하였다. 이 협상은 2007년 3월에 공식 협상을 마감하고, 한·미 양국의 국회 비준을 얻어 6월 30일 이후 발효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

<표 3-5> 한·미 FTA 추진일정

차 수	협상장소	기 간	추진내용
		2006년 1월 18일	노무현 대통령 신년국정연설에서 추진 표명
		1월 24일	한국정부의 미국측 4대 선결조건 전격수용(쇠고기 수입규제 완화, 약가 산정제도 투명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 완화, 스크린 쿼터 축소)
		2월 2일	협상개시 공식선언
		3월 6일	1차 사전준비 협의
		4월 17~18	2차 사전준비 협의(공식명칭 KorUS FTA 17개 분과 설치 합의)
		5월 19일	협정문 초안 교환(상대국 협정문 검토)
1차	워싱턴 DC	6월 5일~9일	19개 분과별로 한·미 양측이 각각 제시한 협정문 통합 작업

2차	서울	7월 10일~14 일	농산물, 섬유, 일상품의 3개 양허안(개방 계획 리스트)작성방법 협의 (상품 양허/ 유보안 교환)
양허안 교환		8월 15일	상품, 농산물, 석유 등 11,261개 품목에 대한 1차 관세 양허안 일괄 교환
의약품 협상		8월 21~22일	의약품 추가 협상 진행. 한국이 건강보험, 의약품 등재 방식을 선별 등재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미국이 수용
3차	시애틀	9월 6~9일	양허안, 유보안 협상 시작
4차	제주	10월 23~27일	추가 협상
5차	몬타나	12월 4~8일	추가 협상
6차	한국	2007년 1월	추가 협상
		2007년 3월	공식협상 마감, 타결 시한
		4월~6월	미 의회 사후검토(90일)
		7월 1일	미 행정부 신속협상권(TPA) 소멸
		~ 이후	양국 의회 비준 및 발효

자료 : 조선일보(2006. 9. 4.) 참조하여 재정리함.

3. 한 · 미 FTA 협상추진 과정

(1) 제1차 협상과정

제1차 협상은 2006년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워싱턴 DC에서 개최되

었으며, 한국측은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와 재정부, 외교부, 농림부, 산자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등 23개 부처 및 11개 국책연구기관 146명이 참석하였고, 미국측은 Wendy Cutler USTR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미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농림부 등 약 180명이 참석하였다. 전체 17개 분과 및 2개 작업반 중 15개 분과 및 2개 작업반이 협상을 개최하였고, 정부조달(5. 29, 6. 2), 기술장벽(TBT) 분과 (6. 5)는 제네바에서 별도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1차 협상 결과에서는 제1차 협상인 만큼, 한·미 양측 간의 입장 파악 및 쟁점 정리에 주력하였고, 한·미 양측이 각각 준비한 협정문 초안을 통합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한·미 FTA 개막에 즈음하여, 우리 대표단은 다음 두 가지 원칙을 천명하였다.

첫째: 한·미 양측 이익의 균형

둘째: 민감 분야에 대한 상호 존중의 중요성

한·미 양측은 전반적으로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하에 협의를 진행하여, 한·미 양측 제도에 대한 정보교환, 조항별 입장 교환 등을 통해 초안에 대한 한·미 양측 입장의 이해를 제고하였고, 대부분의 분과에서는 한·미 양측이 각각 준비한 협정문 초안을 통합하여 차기 협상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전체 17개 분과 중 13개 분과에서 향후 협상의 기초가 될 통합협정문을 작성하였으며, 통합협정문은 한·미 양측 모두의 입장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한 것으로 협상의 기초 문서로 활용하기로 하였고, 상품무역, 원산지/통관, 기술장벽,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경쟁,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총칙/분쟁해결 등에 관해 작성하였다. 그러나 농업, 위생검역(SPS), 섬유, 무역구제 등에 관해서는 미 작성되었다.

한·미 양측간 입장차이가 큰 농업·SPS³⁵⁾·섬유·무역구제 분과에서는

35)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대해 시행되는 조치를 말한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당분간은 쟁점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고, 협정문의 통합은 추후에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한·미 양측은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입장을 청취함으로써, 향후 협상 전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1차 협상의 각 분야별 협상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상품무역 분야 - 한·미 양측은 통합협정문 초안에 합의는 하였으나, 상당수 조항에 대해 이견이 상존 (Jones Act³⁶, 관세 환급, 조정관세 관련 내용)하였다. 한국은 미국측이 부과하는 물품취급수수료 및 항만유지수수료 폐지를 요청하였으며, 한·미 양측은 제2차 협상 시 상품 양허안 교환을 위해 양허방식에 대한 예비적 의견도 교환하였다.

원산지/통관 분야는 내용이 기술적이고 이해관계가 중립적인 사항이 많아 상당수 조문에 합의를 도출하였다. 다만, 개성공단과 관련된 조항에는 이견을 노정하여 괄호(bracket)처리하기로 하였다. 이때 주요 합의 분야는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수출입자의 협력의무 및 통관 신속화 조치 등이었다.

한국측은 농업분야 취약성을 감안하여 관세할당제도(Tariff Rate Quota, TRQ) 관리, 농산물 세이프가드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미국측은 관세할당제도 운영의 투명화를 요구하고,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한·미 양측 간 입장 차이로 당분간은 쟁점 위주로 논의를 전개하고, 협정문 통합은 추후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만, 한·미 양측은 상호 입장에 대한 진솔한 논의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협상진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을 확인하였다.

한국측은 섬유/의류 제품의 예외 없는 관세 양허 및 관세의 조기 철폐를 적극 요청하였던 바, 미국측은 예외 없는 관세 양허에 원칙 동의하되, 구체적인 관세양허는 추후 협상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한국측은 완화된 원산지기준 적용을 주장한 반면, 미국측은 엄격한 원산지규정 도입과 특별 세

36) Jones Act: 연안 해운에 사용되는 선박을 미국 내에서 건조되는 선박으로 한정하는 미국의 법률이다.

이프가드 (emergency action)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한국측은 반덤핑 발동 남용 방지 및 발동요건의 강화를 주장한 반면, 미국측은 무역구제 관련 법령의 약화를 초래하는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도 한국측 입장을 청취하였다.

미국측은 위생검역조치 관련 협의 채널로 위원회 설치를 주장하였으나, 한국측은 접촉선 지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미국측의 개별 품목에 대한 논의제기는 없었으며, 개별 사안은 별도 양자통상 현안 차원에서 제기 예정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미 양측은 자동차 세제·표준·소비자 인식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고, 금번 협상에서는 분야별로 한·미 양측의 개괄적인 상호 입장을 확인하였으며, 미국측의 배기량 기준 세제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한국측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미국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강한 반대와 우려를 표명한 바, 한국측은 미국측의 이해 제고를 위해 우리 입장을 설명하였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외국산 제품에 차별적이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② 서비스/투자 분야 - 한국측은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미국측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미 양측은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 도입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세부 내용(적용범위, 중재절차의 공개수준)에는 이견이 노정되었으며, 국경 간 서비스 무역/일시 입국에 있어서 한국측은 전문직 상호 인정과 전문직에 대한 쿼터의 설정을 강하게 요청하였다. 미국측은 교육 및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제도의 변경과 이를 통한 시장개방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한·미 양측은 금융분야 국경 간 거래는 열거한 분야에 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한국측은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미국측도 이러한 한국측 우려에 어느 정도 이해를 표시하였다. 또한 미국측은 우리나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한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보호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당국의 기존 제도 하에서 신 금융서비스 공급 허용을 요청하였으며, 한국측은 미국측의 설명을 청취하였으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유보하였다.

미국측은 사업자에게 통신 분야 기술선택의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하였고, 한국측은 정당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 역할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한국측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현행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되, 향후 WTO 결정에 따라 재검토하자고 주장한데 대해, 미국측은 무관세 관행의 영구화를 주장하였다.

③ 기타 -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총칙/분쟁해결)에서 한·미 양측은 정부가 독점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키로 합의하되 다만, 정부 독점 및 공기업이 반경쟁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강화된 의무부과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한·미 양측은 그간 미국의 소극적 대응으로 중단되었던 “경쟁협력 협정”에 대한 논의도 FTA 협상과 병행하여서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미국측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집행 강화(법정손해배상제도, 비친고죄 적용확대)를 요구하였고, 한·미 양측은 각종 쟁점에 대한 양국 간 기본 입장과 제도 현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고, 상당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협정문의 통합에는 합의하였다.

또한 한국측은 우리 노동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우리의 높은 노동 보호수준을 소개하였으며, 한·미 양측은 공중의견 제출제도(public communication) 도입 및 국내 노동법 집행 실패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도입에 대해서 입장 차이를 확인하였고, 아울러 한·미 양측은 자국 환경법·정책 및 집행체제에 대한 상호 설명을 통하여 이해를 제고하고, 한·미 양측 초안에 대한 조항별 설명과 토의위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국내법의 효율적 집행 및 집행 실패 시 분쟁해결방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확인하였고, 아울러, 한·미 양측 간 환경 협력 강화를 위해 FTA와는 별도로 약정 체결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한·미 양측은 공히 FTA 관련 법령 제·개정시,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제공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 일치를 보았다. 다만, 미국측은 입법예고 기간을 최소 60일로 설정하고, 의견반영 결과를 공표하도록 요청하였다.

(2) 제2차 협상과정

제2차 협상은 2006년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한국측은 24개 부처·16개 국책연구기관 271명이 협상에 참여하였으며, 미국측은 75명이 참여하였다.

협상개최분야는 17개 분과 및 2개 작업반에서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정부조달 분과 협상은 제네바에서 별도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제2차 협상 결과에서는 농산물/섬유는 각자의 방식으로 양허안을 작성하여 8월 상반기에 양허안과 함께 일괄교환하기로 하였다. 서비스와 투자 유보안을 교환하였으며, 통합협정문상 쟁점논의는 계속하였다. 의약품관련 4개 분과 회의는 추진하지 못했고, 상품/서비스/섬유 관세철폐 양허안은 8.15 이전 일괄 교환기로 합의하였다.

상품의 경우, 양허단계(category)는 즉시철폐/ 3년/ 5년/ 10년/ 기타(undefined : 양허제외, 10년 이상 등 포함) 5단계로 구분하여 교환기로 합의하였고, 기타 양허제외 항목과 한국측 민감 품목에 대하여는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농산물/섬유분야는 양허안 작성에 대한 기본원칙 합의 없이 한·미 양측이 각각 작성하여 교환하기로 하였으며, 한·미 양측은 서비스/투자 1차 유보안을 교환하고, 한·미 양측 간의 주요 관심분야를 파악하기로 하였다. 한국측의 1차 유보안은 기존 FTA를 기초로 하여, 신규 유보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신금융서비스의 공급은 국내 상업적 주제, 국내 법령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하에서, 신상품 건별로 금융당국의 허가하에 가능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한국측이 “약제비적정화방안(5. 3 발표)”의 주요 내용 및 추진일정을 설명한데 대해, 미국측은 FTA 틀 내에서의 논의과정 없이 추진되는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여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가 중단되었다.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에 관련하여, 한국측은 기존 FTA 사례와 기술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미국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

준입장을 견지하였으며, 미국측은 교육 및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전기, 수도 등)분야의 개방에도 관심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한국측은 미국 섬유시장 접근의 개선점과 투자·서비스분야 임시 세이프가드 도입 등 한국측 관심사항을 미국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미국측도 저작권보호기간의 연장 및 지적재산권 집행보호 강화, 미국산 자동차의 시장접근 개선 등을 요구하였다.

분야별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상품무역 분야 - 상품 양허안 작성과 관련하여 우리 입장이 대부분 반영된 기본원칙에 합의하였다. 양허단계는 즉시철폐/3년 /5년 /10년 /기타 양허제외, 10년 이상 등 포함) 5단계로 구분하여 교환하였다. 그 외 내국민대우 예외인정(Jones Act), 조정관세 적용배제, 관세감면 금지, 관세 환급 금지, 물품취급수수료 및 항만유지수수료 면제 등 대부분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한·미 양측은 기존 입장을 견지하였다.

한·미 양측은 자동차 배기량기준 세제·표준·소비자 인식 문제를 집중 논의하였으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미국측의 자동차 표준관련 작업반 설치를 제안 하였고, 한국측은 기존 협의채널로 충분하므로 신규 설치에 반대하였다. 한국측이 “약제비적정화방안(5. 3 발표)”의 주요 내용 및 추진일정을 설명한데 대해, 미국측은 FTA 틀 내에서의 논의과정 없이 추진되는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였다. 이에 한국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 및 건전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조치임을 강조하였다.

농산물 양허안 작성관련 기본원칙에 대한 구체적 합의 없이 각자의 입장에 따른 양허안을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TRQ 운영,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한·미 양측 간 의견 차이를 재확인하고, 주요 쟁점 관련 양국 제도 및 운영현황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해 이해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측은 다양한 TRQ 운영방식 유지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섬유류 양허안 작성관련 기본원칙에 대한 구체적 합의 없이 각자의 입

장에 따른 양허안을 교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한국측은 섬유/의류에 대한 조기관세 철폐와 완화된 원산지 기준 적용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미국측은 엄격한 원산지규정(원사기준)과 섬유 세이프가드의 필요성에 대한 기존 입장을 견지하였다.

개성공단의 원산지특례 인정과 관련하여, 한국측은 기존 FTA의 사례와 원산지 인정을 위한 기술적 사항을 설명하였으나, 미국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한·미 양측은 위생검역조치(SPS) 통합협정문을 작성하여 추후 협정문 교섭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협의 채널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였다.

기술장벽과 관련하여, WTO, TBT 협정 준용, 정보협력 등 일반적 규정에 합의하였으나, 민간인증(예: 미 UL마크)에 대한 정부의 관여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였다.

② 서비스/투자 분야 - 한국측은 외환위기의 경험, 국회비준 등을 감안하여 국경간 자본거래 및 송금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임시세이프가드’ 조항은 반드시 반영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미국측은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였다.

한·미 양측은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의 적용범위, 중재절차의 공개수준 등 주요쟁점에 대해 기존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한·미 양측은 서비스/투자 유보안 초안을 교환하고 제3차 협상부터 본격적으로 유보안 협상에 집중기로 하였다. 한국측 유보안은 기존 FTA 유보사항과 함께 신규 유보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작성하였고, 미국측은 교육 및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전기, 수도 등)분야의 개방에도 관심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신금융서비스의 공급은 국내 상업적 주재, 국내 법령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하에서, 금융당국의 허가 하에 가능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미국측은 우체국 보험사업의 민영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우체국이 운영하는 보험에 민간보험사와 동일한 관련 법령의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나, 한국측은 우체국 보험은 설립근거법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통신 분야 기술선택의 자율성 보장 등 주요 쟁점에서 의견 차이를 확인 하였고, 전자상거래 관련, 온라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협력조항³⁷⁾ 등 일반적 협력사항에는 합의하였으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이슈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③ 기타 분야 - 한·미 양측은 경쟁법 집행 관련, 이미 국내법상 시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합의 (청문절차, 경쟁법 집행 협력 등)하였으며, 미국측은 정부독점 및 공기업이 반경쟁적·비차별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의무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한·미 양측은 정부조달 양허기관, 양허하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달 제1차 양허안을 교환하고 의견교환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쟁점에 대하여 한·미 양측의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했으나, 지적재산권 집행 분야 논의에서 한·미 양측 간 제도 차이에 대하여 이해를 제고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동/환경 분과에서 주요 쟁점에 있어 의견차는 좁히지 못하였으나, 공중의견 제출제도, 집행 실패시 분쟁해결절차 등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를 제고 시켰으며, 한·미 양측은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 지나친 행정부담 없이 실현 가능한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제3차 협상과정

제3차 협상은 2006년 9월 6일부터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측은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와 재경부, 외교부, 농림부, 산자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등 26개 부처 및 13개 국책연구기관 등 218명이 참석하였고, 미국측은 Wendy Cutler USTR 대표를 수석대표로 USTR, 국무부, 상무부, 농무부 등 20여개 부처 약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때 17개 분과 및 2개 작업반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제3차 협상 결과, 관세 양허안 협상에서 다음 <표 3-6>에서와 같이 한국

37) 전자상거래상 사기 등으로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관련기관 간 협력 규정

측은 미국측 양허안 내용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미국측은 상품과 섬유 분야에서 일부 개선된 수정양허안을 협상 기간 중에 제시하였으며, 미국측은 한국측 농산물 양허안이 보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평가하여, 국내 생산이 미미하거나 저 관세 품목과 같은 민감성이 덜한 품목들에 대한 우선적인 양허수준 개선을 요구하였다.

서비스/투자 유보안과 관련하여서는, 한·미 양측은 유보안 내용에 대해서 명료화 작업과 함께 4차 협상 전 교환한 관심목록(request list)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였고, 한국측은 미국측의 항공, 해운서비스,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주정부 조치의 구체적인 기재 등 분야에 관심을 전달하고 추가 개방을 요구하였으며, 미국측은 택배, 법률, 회계, 통신, 방송 등의 분야에 대하여 관심이 있음을 전달하였다.

협상이 중반에 접어들어 따라 한·미 양측은 경미한 의견차가 있는 내용이나, 실질적인 이해가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는 유연성을 발휘하였다.

〈표 3-6〉 한·미 FTA 상품분야 쟁점 비교

한국측	구분	미국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시 철폐, 3년 내, 5년 내, 10년 내, 기타 등 5단계로 구분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한국이 강한 품목은 대부분 즉시 철폐로 분류 	<p>상품(공산품) (품목수: 9,158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시 철폐, 3년 내, 5년 내, 10년 내, 기타 등 5단계로 구분 · 석유화학, 의료기기 등 미국이 강한 분야 즉시 철폐로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시 철폐, 3년 내, 5년 내 철폐 등 3단계로 구분 · 섬유 품목 대부분을 즉시 철폐로 분류 	<p>섬유 (품목수: 1,296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시 철폐, 3년 내, 5년 내, 10년 내, 기타 등 5단계로 구분 · 즉시 철폐는 거의 없고 대부분 10년 내 이상으로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시 철폐, 5년 내, 10년 내, 15년 내 철폐, 기타 등 5단계로 구분 · 쌀 쇠고기 콩 등 개방제외를 비롯해 상당수 15년 이후로 분류 	<p>농산물 (품목수: 807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시 철폐, 2년 내, 5년 내, 7년 내, 10년 내 철폐 등 5단계로 구분 · 농산물 상당 비중을 즉시 철폐 대상으로 분류

자료 : 연구자가 정리함.

이때 분야별 협상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① 상품무역·농산물·섬유 분야 - 한국측은 미국측에 상품(공산품) 양허안의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하였고, 미국측은 일부 개선된 수정양허안을 제시하였다. 미국측은 농산물 양허안에서 자국 관심분야에서 한국측 양허안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민감성이 덜한 품목부터 양허 수준의 개선을 요구하였고, 미국측은 섬유시장 개방에 따른 자국 업계 보호를 위한 장치로서 섬유 세이프가드 도입과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을 요구하였다.

② 서비스/투자·금융서비스·통신 분야 - 한·미 양측은 서비스/투자 유보안 협상을 위한 서비스/투자 분과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제2차 협상 시 교환한 한·미 양측 유보안과 제3차 협상 전 교환한 한·미 양측 관심목록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한국측은 미국측 해운서비스 개방, 주정부 조치들의 유보안 기재, 전문직 비자쿼터 배정, 일시입국 원활화 등을 요구하였고, 미국측은 분야별 관심사항에 대하여 우리의 현행 개방계획을 명확히 반영하거나, 택배, 법률, 회계, 통신, 방송 등의 분야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고, 한국측 관심사항 중 하나인 전문직자격 상호인정에 대해 미국측은 한국의 제안문안(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협의메커니즘의 마련)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처음으로 표명하였다.

투자 분과에서는 일시 세이프가드 조항 도입, 투자자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대상을 제한하자는 한국측 제안에 대해 미국측은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계속하면서, 구체적 제안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미국측은 제한된 범위의 금융서비스 국경 간 거래, 신금융서비스 허용에 대한 한국측 우려에 인식을 같이 하며, 상호 수용 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국측은 국책금융기관은 FTA협정의 적용제외로 할 것을 명확히 전달하였다.

통신 분야 기술선택의 자율성에 대하여 한·미 양측은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한국측의 현행 통신규제체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미국측이 제안한 통신관련 규제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문안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③ 기타 분야 - 무역구제 관련, 한국측 관심사항인 반덤핑 조치의 엄격화를 위한 제안내용들을 미국측에 상세히 설명하고, 무역원활화의 FTA 취지를 감안하여 협정반영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자동차작업반에서 미국측은 우리의 배기량별 세제의 폐지를 계속하여 요구하였으며, 한국측은 정책목표 달성 및 세수확보 차원에서 폐지 불가 입장을 견지하였고,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에 대해서 미국측은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논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였다. 경쟁분야에서 “재벌”

관련 문안은 현행 공정거래법의 동등 적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의무부담은 없음을 확인하였지만, 관련 문안의 삭제를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독점 및 공기업에 대한 협정상 의무는 매우 한정적인 범위 내 부과된다는 점과,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은 인정됨을 확인하였다.

정부조달 분과는 한·미 양측 간 조달시장 접근의 개선을 위한 내용과 조달시장 개방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지적재산권 분과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50년부터 70년)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집행강화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고, 수정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의약품 작업반에서 한·미 양측은 연내 시행예정인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세부내용,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강화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다.

④ 환경 분야 - 환경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 메카니즘을 별도로 설치한다는데 원칙 합의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⑤ 노동 분야 - 양국 정부간 협의 절차에 관한 문안에 일부 진전이 있었고, 총칙 분과에서 미국측은 협정의 “영문본 우선 원칙”을 포기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4) 제4차 협상과정

제4차 협상은 2006년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 중문 단지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측은 김종훈 수석대표와 재경부, 외교부, 농림부, 산자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자 251명이 참석하였고, 미국측은 수석대표와 USTR, 국무부, 상무부, 농무부 등 관련자 104명이 참석하였고, 정부조달 분과 회의를 제외한 16개 분과 및 2개 작업반의 협상이 진행되었다.³⁸⁾

제4차 협상부터 상품양허안의 골격을 마련하는 등 양측간 이견차를 좁혀 나가기 시작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4차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 제5차 협상부터 핵심쟁점 타결을 개시할 수 있도록

38)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자료를 참조하여 재정리함.

전 분야에서 협상진전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한미 양측은 양허안 및 서비스·투자 유보안 타결의 골격을 마련하였다.

미국측이 2차례의 개선안을 제시하여, 그 동안 양허안 협상의 진전에 장애가 되어 온 상품 양허안의 불균형 문제를 일정수준 해소하였으며, 농업분야 양측 양허안은 점진적 개선토록하고 한국측은 농업 특별세이프가드 반영에 치중하였고, 미국측에 대해 섬유 양허안 개선을 요구하였다. 서비스·투자 유보안의 명료화 작업을 완료하여 실질적인 협상의 가속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제5차 협상 전(2006. 11. 18 목표)에 수정유보안을 작성, 교환 추진하기로 하였다.

협정문 협상에서 핵심 쟁점을 제외한 내용에 대하여 협정문상의 이견부분을 상당수 축소하였다. 다만,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양측이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진전이 미미하였고, 일시적 세이프가드, TRQ 관리 등 일부 한국측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미국측의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방대한 협상내용과 현재까지의 진도 등을 고려하여, 연내 계획되어 있는 제5차 협상 이후에 2007년 1월 중 제6차 협상의 개최를 잠정 합의하였다.

각 분야별 협상 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았다.

- ① 상품무역 분야 - 한국측은 양측 양허안간 불균형을 지적하고, 미국측 상품 양허안의 추가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여 미국측은 middle range(3년/5년/10년) 품목 1,000개를 “즉시철폐”로 전환하는 양허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수입액 기준 불균형의 원인인 자동차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현재로서는 개선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② 농산물 분야 - 한미 양측은 농업 분야 통합협정문 작성에 있어서 한국측 요구사항인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에 합의하고, 세부 내용은 지속 협의 예정하기로 하였다. 한국측은 미국측에 수정양허안을 전달하여, 미국이 향후 협상과정에서 추가 양허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③ 섬유 분야 - 한국측 섬유 text와 미국측의 섬유양허 개선안을 교환하였다. 한국측은 미국측 개선안이 실망스러운 수준임을 지적하고, 미국측이 수

정양허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으며, 한국측은 미국측의 관심사항인 섬유세이프가드와 우회방지 등을 감안한 text를 전달하고, 세부 문안을 협의하였다. 섬유 원산지기준 관련, 한국측은 원사기준(yarn forward)의 완화를 미국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④ 서비스·투자 분야 - 서비스·투자 분과 공동회의를 통해, 양측 유보안 및 관심사항(request list) 내용에 대한 명료화 작업을 완료하였다. 한미 양측 유보안 내용 중 모호하거나 불필요하게 포괄적인 내용은 수정작업을 거쳐, 제5차 협상 전(2006. 11. 18 목표) 수정유보안을 교환기로 합의하였다. 협정문 협상에서 미국측은 전문직자격 상호인정 협의메커니즘 도입에 원칙적 합의하고, 세부내용 문안은 계속 협의기로 합의하였으며, 투자분과에서 일시세이프가드 도입,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내용 등 주요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양측의 기존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소급효 배제, 투자자-국가간 분쟁관련 가처분 조치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하였다.

⑤ 금융서비스 분야 - 한국측은 국책금융기관의 협정적용 배제를 요구하고, 국경간 거래 개방범위를 미국측과 협의하였다. 한미 양측은 제한된 범위의 금융서비스 국경간 거래, 신금융서비스 허용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하면서, 타협 가능한 문안을 적극 모색하였다.

⑥ 통신·전자상거래분야 - 한미 양측은 기술선택의 자율성에 대하여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일부 쟁점(해저케이블 접근권 보장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합의하였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전자상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이용과 접근에 대한 원칙 등의 조항에도 합의하였다.

⑦ 기타 무역구제 분야 - 반덤핑 관련 추가 제안사항을 미국측에 전달하고, 미국측의 전향적 검토를 촉구하여 양자 세이프가드(SG) 관련, 양자 SG와 다자 SG간 동시적용 금지, 산업피해 조사기간 1년 이내 종결규정 등에 대하여 합의 도출하였다.

원산지 분과에서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문제는 여전히 한국 관심

사항임을 표명하였고, 공산품 분야(섬유 제외) 품목별 원산지기준 협상에 서 목재, 모자, 도자기, 귀금속 등 16개 분야에서 합의하였다. 통관절차와 관련, 세관당국간 협력조항, 협정의무 위반시 국내법에 따른 벌칙부과 조항에 합의하였다. 자동차 작업반에서 상호주의에 기반 한 자동차 표준작업반 도입에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자동차 배기량기준 세제관련에는 한미 양측간에 이견이 지속되었으며, 의약품 작업반에서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시행은 계획대로 연내 추진할 것임을 미국측에 전달하고, 세부내용을 협의 계속하였다. 그리고 경쟁 분과에서는 한국측이 독점·공기업 의무와 관련 수정문안을 제시하였으며, 미국측도 상업적 고려관련 한국측 수정문안의 근본 취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기업집단(재벌) 관련 각주, 동의명령제 도입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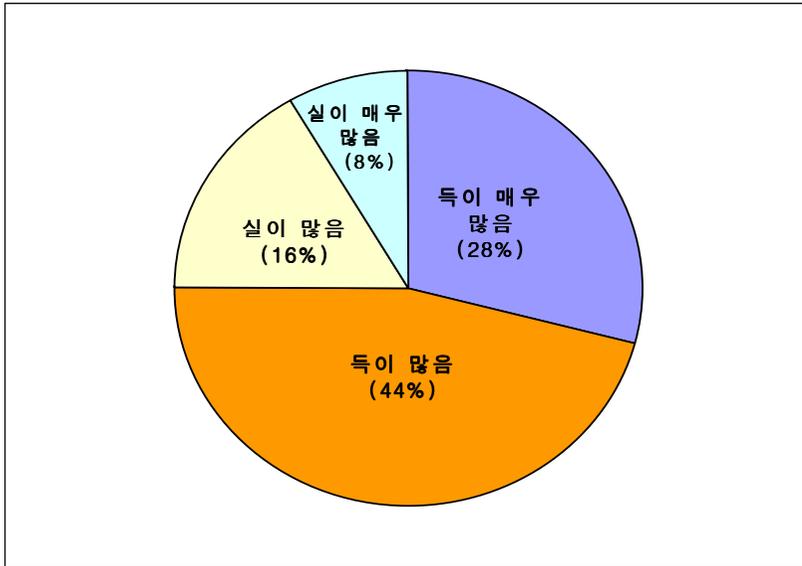
환경 분과에서 협정의 이행감독을 위한 환경이사회 설치,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문안에 합의하였다. 지적권 집행 분야에서 가치분 제도, 소송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총칙 분과에서는 한미 양측이 모두 당사국인 OECD 반부패 협약의 주요 내용을 협정문에 반영기로 원칙적 합의를 하였다.

제3절 한·미 FTA의 기대효과 분석

1. 기대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매일경제와 동아시아 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경제·경영학자들을 대상으로 FTA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제2차 자료에 의하면 다음 <그림 3-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자들은 한·미 FTA 결과 일자리, 서비스산업 및 무역 가격 경쟁력 향상 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양극화와 농업, 지적재산권에 대한 염려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종합평가에서 실보다 득이 많을 것이라고 보았다. 즉, ‘한·미 FTA 이렇게 본다’는 설문조사에서 경제·경영학자 72%가 ‘실보

다 득이 많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 중 '득이 매우 많을 것'이라는 대답이 28%, '득이 많을 것'이라는 응답은 44%로 나타났다. 반면, '득보다 실이 약간 많을 것'이란 응답은 16%, '실이 매우 많을 것'이란 대답은 8%에 불과하였다.



<그림 3-1> 한·미 FTA 효과분석

자료: 연구자가 작성함.

한국제품의 가격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관세율을 인하 또는 폐지에 따른 '가격 하락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응답 12%를 포함해 가격효과를 기대하는 응답이 92%에 달했다.

미국시장 관세율이 이미 낮기 때문에 FTA가 체결되더라도 추가적인 가격인하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이보다는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가 중국이나 일본 제품에 비해 낮아지는 효과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많았다.

최근의 한·미 FTA 반대운동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미 FTA 반대운동이 경제적 득실을 고려한 것이라는 응답이 18%에 불과한 반면, 이보다는 '반미 감정의 표출'이나 '현 정권에 대한

반대 표시'처럼 경제 외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여기는 경제학자들이 많았다. 또한 '현 경제상황에 대한 불안감 표시'라고 대답한 경제학자도 28%에 달했다.³⁹⁾

이들 경제·경영학자들은 한·미 FTA가 앞으로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비스 경쟁력 향상을 포함한 5가지 분야에 대해 절대 다수의 학자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학자들은 한·미 FTA 체결로 가장 기대되는 효과로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꼽았다. 설문에 답한 경제학자 94%가 한·미 FTA 체결 때 서비스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으로 한·미 관계 제고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응답자 92%가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미 관계가 보다 긴밀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대될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았다. FTA 체결 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28%에 그쳤지만, 약간 증대될 것이라는 응답이 64%에 달해 전반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학자들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또한 86%의 경제학자가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 가격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결과와 달리 국내 '일자리 증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답변도 있었다. 18%의 학자들이 한·미 FTA 체결 후 일자리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고,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도 1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미 FTA 체결은 서비스산업이나 무역가격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반면, 고용창출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39) 매일경제, 2006. 9. 4.

2. 기대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그 동안의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 <표 3-7>과 <표 3-8>에서와 같이 대체적으로 한·미 FTA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입증가율이 대미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후생수준 및 GDP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3-7〉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의 연구결과

구 분	주요 결과
김우택(1986)	-한국의 대미국 수출이 18.25% 증가하고, 수입이 12.93% 증가 -한국의 대미국 무역수지가 10억 달러 개선
한국무역협회 · 산업연구원 (1989)	-한국측 유리품목: 의류, 철강, 금속제품, 섬유, 여행용구 -미국측 유리품목: 농업, 화공, 전기기계, 기계류(특수, 정밀, 동력) -득실판단 어려운 분야: 통신기기, 승용차, 컴퓨터, 산업용 일반기계
왕윤중· 정인교(1998)	-한국GDP가 0.36%, 후생수준이 215억 달러 개선 -농업부문의 제외는 한국의 후생수준을 악화시킴
정인교(1999)	-한국의 후생수준 및 실질소득이 각각 30.3%, 49.4%증가
Choi·Schott (IIE,2001)	-장기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각각 109억 달러, 89억 달러의 후생개선 효과 기대 -한국의 대미국 수출과 수입은 각각 30.3%, 49.4% 증가
USITC(2001)	-한국과 미국의 GDP가 각각 0.69%(39억 달러), 0.23% (196억 달러) 개선 -미국의 총수출이 0.8%(70억 달러), 총수입이 1.0%(130억 달러) 증가 -한국의 대미국 수출과 수입은 각각 21%(100억 달러), 54%(190억 달러)증가되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90억 달러 악화
Dean Dorosa· John Gilbert (IIE,2004)	-한국과 미국은 각각 0.37%, 0.03%의 후생개선 효과 기대 -한국의 대미국 수출 및 수입은 22.9% 및 49.6%, 미국의 대 한국 수출 및 수입은 43.2% 및 23.4% 각각 증가
박순찬, 강문성 (KIEP, 2004)	-한국의 대미수출은 다년간에 걸쳐 352.5억~462.0억 달러 증가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38억~96억 달러(14~35%)증가, 기타 국가의 대한국 투자는 178억~222억 달러(28~35%)증가
정인교 (2004)	-국내 가구당 소득이 연 36만원 증가 -125,000개의 일자리 신규창출
무역협회 (2004)	-한국의 대미수출과 수입은 각각3.6%(12.4억 달러), 8.7%(21.7억 달러)증가하여 대미 무역수지는 9.3억 달러 악화

자료: 전국경제인 연합회, 「한·미 FTA 쟁점사항과 대응과제」, 2006. p.13.

다음 <표 3-8>은 1980년대 이후 무역자유화 등 경제정책이나 제도의 변화가 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CGE 모형을 이용해 추정한 수치이다. 그러나 CGE 모형은 단순화된 몇몇 가정 하에 경제 전반의 작동원리를 추상화한 것으로써 동 모형을 통해 FTA 등 특정 정책변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CGE 모형의 유용성은 파급효과의 정확한 예측치 추정에 있기보다는 파급경로 및 이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⁴⁰⁾

한·미 FTA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있는 자본재의 접근용이, 기술의 학습효과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이며, 생산성의 증대 규모에 따라 실질 GDP와 고용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표(3-8)에서 관세율 하락을 통한 순 가격효과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실질 GDP가 0.42% 증가하는데 그치는 반면, 관세율 변화로 창출된 추가소득을 통한 자본축적효과를 고려할 경우에는 이의 약 4.5배에 해당하는 실질 GDP가 1.99%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 생산성 효과까지 추가할 경우에는 0.42%의 약 18배에 달하는 7.75% 수준의 GDP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미무역수지가 단기적으로 42억 달러, 중장기적으로 51억 달러 흑자 감소가 예상되지만 중장기 누적개념으로 생산증가 352억 달러, 고용증가 55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40) 정인교, 「한·미 FTA논쟁 그 진실은」, 해남, 2006, p.104.

〈표 3-8〉 한·미 FTA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구분	단기(정태)효과	중장기(동태)효과	
실질GDP	0.42%(29억 달러 증가)	1.99%(135억 달러 증가)	
후생수준	0.61%(24억 달러 증가)	1.73%(68억 달러 증가)	
교역	대미수출	12.1%(54억 달러 증가)	15.1%(71억 달러 증가)
	대미수입	29.1%(96억 달러 증가)	39.4%(122억 달러 증가)
	대미무역수지	42억 달러 흑자 감소	51억 달러 흑자 감소
생산	0.61%(8.5조 원 증가)	1.94%(27.0조 원 증가)	
고용	-0.51%(85천 명 감소)	0.63%(104천 명 증가)	

자료 : KIEP(<http://www.kiep.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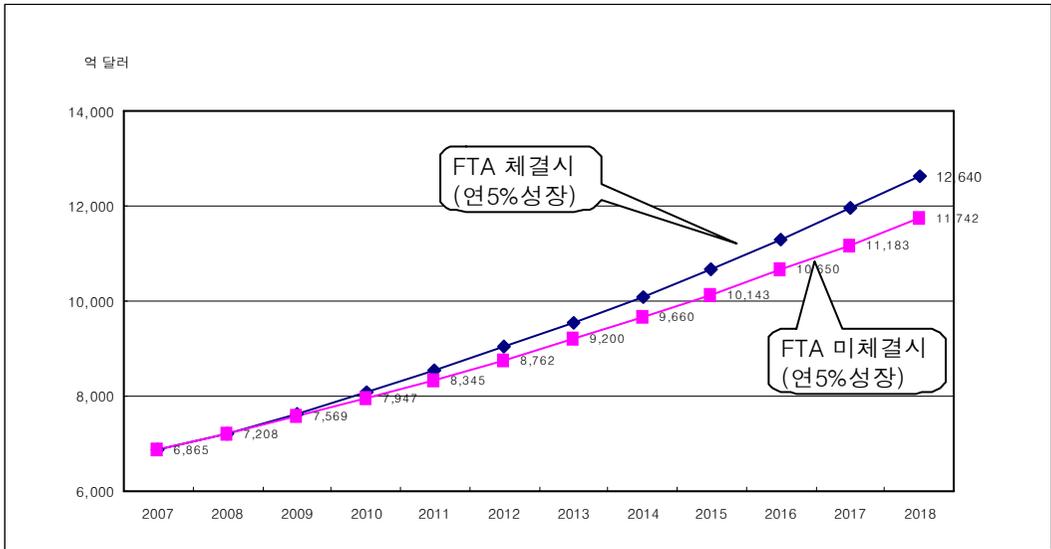
주: 1) 2004년 실적치 기준임.

2) 가격인하 등에 따른 소비자잉여 증가 및 생산자가격 상승과 생산량 증대에 따른 생산자잉여 증가의 합임.

3) 동 분석에 사용된 시나리오는 공산품의 완전개방, 농산물의 경우 한국은 80%, 미국은 100% 개방, 서비스 교역장벽 20% 완화를 가정함.

4) 중장기(동태)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소득증대로 인한 자본축척 효과를 감안함.

거시경제지표의 중요한 지표인 실질 GDP증대는 한·미 FTA체결시 경제성장률 연5%로 가정하고, 10년 후 시장의 완전 개방을 전제로 한·미 FTA 체결시 성장률을 실제 관세감축이나 서비스 시장개방 수준에 연동하지 않고 균등하게 연 0.78% 추가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다음 <그림 3-2>에서와 같이 2018년 910억 달러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한·미 FTA의 실질GDP 효과

자료 : KIEP(<http://www.kiep.go.kr>).

3. 각 산업분야별 기대효과 분석

무역협회의 한·미 FTA 산업별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 <표 3-9>에서와 같이 섬유류와 전자, 고무제품, 가죽제품, 신발류 등은 수출시 증대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농산물과 의약품, 화장품 등은 수입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되었다. 그 중에서도 한·미 FTA가 체결 되면 농산물, 자동차, 섬유, 전자, 금융, 법률, 교육 분야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전망되고 있다.⁴¹⁾

41) 한국경제신문, 2006. 5. 18.

<표 3-9> 한·미 FTA 산업별 영향

분야	평균관세율(%)		수출 증대효과	수입 증대효과	국내 업계피해
	한국	미국			
농산물	48	9	×	●	●
자동차	7.9	2.7	●	△	×
기계	6.6	1.9	○	○	△
석유화학	6.1	4.3	△	△	△
의약품·화장품	6.0	1.5	△	●	●
섬유의류	9.7	8.6	●	×	×
전자	5.0	1.6	●	△	×
철강	0	0	△	△	×
고무·고무제품	7.1	2.3	●	△	×
가죽·가죽제품	8.0	4.3	●	△	×
신발·모자류	10.2	11.1	●	△	×

자료: 이해영, 낫선 식민지, 한·미 FTA 메이데이, 2006. p. 69.

●: 효과(피해)가 매우 크다. ○: 효과(피해)가 있다.

△: 효과(피해)가 미미하다. ×: 효과(피해)가 거의 없다.

① 농산물 - 한·미 FTA 체결로 쌀을 포함해 모든 농산물의 관세가 철폐되면, 농업소득이 무려 7조 7000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수산업 분야에서도 농업과 비슷한 수준의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한·미 FTA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액을 2조 2830억 원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쌀을 포함해 모든 농·축산물의 관세가 철폐되면 농업 소득 감소액 규모는 7조 6932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민감 품목의 신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미국측의 농산물 보조금을 통한 덤핑수출에 대해서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② 자동차 산업 - 한·미 FTA가 체결되면 자동차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잘못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영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 수입관세(2.5%)철폐 효과가 작은 데다 우리 자동차의 현지생산 확대에 따라 대미 수출 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미국 ‘빅3’ 자동차는 관세 8%에 특소세, 부가세 등 관련 세금도 인하여 공급가격 기준으로 10.5%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돼 판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도요타, 혼다 등 미국 내 일본업체 생산차량도 상당량 한국으로 수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③ 섬유산업 - 섬유산업은 한·미 FTA 체결 시 대표적인 수혜업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염규배 섬유산업협회 팀장은 “2005년 총 섬유수출에서 대미 수출비중은 17%이나, 한·미 FTA 체결 시 이 비중이 약 20%까지 상향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는 2005년 대미 섬유류 수출액인 23억 2700만 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단순 관세철폐 시 수출증대 효과는 약 2억 달러, 원산지 규정 완화 시에는 약 4억 달러의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하였다.

④ 전자산업 - 한·미 FTA가 체결되면 전자산업 중 디지털 TV 등 가전 분야의 가격 경쟁력은 소폭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 제품은 현재 미국 내에서 2% 내외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관세가 철폐되면 중국, 일본 제품대비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미 FTA 긍정적 효과로 반덤핑 상계관세 등 통상마찰 완화,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기술협력 및 투자 확대, 일부 품목의 대일 수입 전환 효과 등도 기대되고 있다.

⑤ 금융산업 - 금융 부문에서는 한국의 경쟁력이 미국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에 국내부문의 발전 속도와 보조에 맞춰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신금융서비스 개방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부문 개방방식, 신금융서비스

개방 여부, 국경 간 금융서비스 거래허용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을 내다봤다.

한·미 FTA 체결 이후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생겨 현행법 체계를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또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FTA 사례를 볼 때, 신금융 분야에서 적극적인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⑥ 법률분야 - 법률시장과 교육 분야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충격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란 견해가 제기되었다. 설부른 개방은 국내 로펌(law firm)과 지방 대학들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황보영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는 “법률시장이 개방돼도 변호사 선임이나 기업들의 컨설팅 용역 등 법률 비용이 인하될 가능성은 적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상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외국로펌에 대해 국내 로펌과 합작 및 국내 변호사 고용을 조기에 허용하면, 국내 로펌이 붕괴될 수 있는 만큼 장기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허용 형태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⑦ 교육분야 - 송영식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은 “FTA가 체결되면 미국은 고등교육 분야, 원격교육 분야, 영리목적의 단기 교육·훈련과정 등에서 한국진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 총장은 “교육 서비스 개방은 지방 낙후대학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한·미 FTA 체결 이전에 교육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미국의 사립대학이 받는 정부 보조금 수준 이상으로 국내 사립대학에도 경상비의 일정액을 국고로 지원하고, 반민·반관 형식의 평가전담기구를 설치해 선진국형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제4장 한·미 FTA 추진에 따른 제 문제

제1절 한·미 FTA의 추진 과정상 문제

1. 추진 준비와 절차상의 문제

통상협상은 자국의 이해를 극대화시키려는 목표를 갖는 아주 중요한 국가 간의 거래이다. 그러나 현재 한·미 FTA 추진은 다수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는 물론이고,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국민은 그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다. 미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통상교섭본부는 2004년 초순 이후 한·미 FTA 추진을 위해 부단히 미국의 관계자를 설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무역대표는 한국정부의 시장자유화 의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4가지 전제조건을 천명하고, 느긋이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5년 10월 초 의약품 관련 전제조건을 수용하고, 나머지 3가지 전제조건도 2006년 1월까지 연달아 수용하면서 미국과 한·미 FTA 협상개시를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의 이해관계자는 물론이고, 국회, 학계, 심지어 일부 관계부처조차 소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스크린쿼터의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후 협상개시를 이미 결정한 후 10여 일의 예고를 통해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이는 국민적 의견수렴의 취지가 아닌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에 따른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따라서 공청회는 무산되었고, 결국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버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미 FTA는 철저한 준비도 없고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못했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마저 배제하는 ‘배제의 전략’으로 일관해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⁴²⁾

42) 한미FTA저지 국민운동본부, 「한·미 FTA 국민보고서」, 그린비, 2006, p.128.

정부는 한·미 FTA를 국민적 합의 없이 급하게 개시하여 1년 이내에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는 근거로, 미대통령의 무역증진권한(ATP)이 2007년 6월경에 만료되기에 그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칠레 FTA의 경우도 3년의 협상기간을 소요한 바 있다. 그러나 어느 저명 경제학자는 자신이 반대론을 믿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⁴³⁾

“정부 안에서 조차 FTA의 득실 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1년 안에 협상을 끝내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 체결 절차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다음 <표 4-1>에서와 같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아 국민 갈등에 의한 사회비용이 막대하게 들고 있으며, 국회의 검증이나 견제 기능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철저한 준비 기간이 없이 추진되고 있고, 정부 부처 간, 정당 간에도 조정 없이 추진됨으로써 사회 각계각층 간에 갈등과 시위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표 4-1> 한·미 FTA 체결절차상의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법안의 취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소통 부재 (막대한 사회갈등 비용)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의견·정보 수렴
국회의 검증·견제 역할 부재 (거수기로 전락한 국회)	국회의 검증·견제 기능 실질화
준비 없는 협상추진 (아마추어적 협상)	철저한 준비를 통한 협상추진
정부 부처 간 조정기능 미약 (지속되는 부처간 갈등)	정부 부처 간 조정체제 제도화

자료: 연구자가 정리함.

43) 한국개발연구원, 「한·미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6, pp.175~176.

2. 추진에 따른 사회갈등 문제

한·미 FTA가 정부 일방적 졸속 추진으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됨으로써 농민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미 FTA에 관한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됨으로써 갈등이 증폭되어 반대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 협정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반대 시위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FTA라면 두 손을 들고 환영해야 마땅할 경제학자조차 선뜻 찬성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한·미 FTA 추진에 관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반대 시위가 지속적으로 격화되고 있다.

- ①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40여명은 협상 첫날인 6월 5일 아침 일찍 협상장인 미 무역대표부 건물 앞에서 징과 팽과리를 치며 시위를 벌였다.
- ②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40여명의 한국인 원정시위대는 제1차 협상 기간 동안 촛불집회, 삼보일배 시위 등을 벌였다.
- ③ FTA 체결에 찬성하는 보수단체와 반대하는 진보단체는 12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찬반 집회를 개최하여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다. 이 같은 보·혁 간 대결 양상은 자칫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이성적인 접근 없이 정치적 이해에 따른 국론 분열을 조장할 수 있어 적지 않은 염려를 낳았고, 또, 3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가 부정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6월 12일 오후 4시에는 광화문에서 농민과 노동자 등 10만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상 중단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맞서 국민행동본부와 기독교사회단체 등 12개 보수단체는 FTA 지지 집회를 벌이고, 협상장인 신라호텔까지 거리행진에

나섰다.

④ 전국농민회총연합 등 농민 5만여 명도 상경 투쟁을 벌였고, 노동계도 민주노총이 6월 12일 하루 시한부 총파업을 벌이는 등 FTA 협상 반대 운동에 적극 합류하였다.

⑤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 원불교 등 10개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종교 환경회의와 한·미 FTA 소비자대책위원회 등도(7. 6)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FTA협상 중단을 촉구했다.⁴⁴⁾

⑥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박태주 전 청와대 비서관, 김유선 청와대 대통령 자문 정책 기획 위원과 경제학자 190명도 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⁴⁵⁾

⑦ 김유선 청와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과 경제학자 170명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⑧ 민주노총은 미국 노동계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1만 여명이 서울역 광장에 모였고, 농민 1만 3000여 명은 서울광장, 농협노조 1000여 명은 서대문 네거리 농업박물관 앞, 전국빈민연합 800명은 탑골공원, 한총련 300명은 청계관장에서 각각 집회를 하고, 한·미 FTA 저지 제2차 범국민대회를 연 뒤 청와대와 미국대사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했다.⁴⁶⁾

⑨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농민과 시민단체회원 등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한·미 FTA는 국익이 아니라 국치”라며 “제2의 한일 합방인 한·미 FTA를 막아내자”고 주장했다.

김해농민회(회장 박봉성)회원 200명과 김해자주평화연대 등도 이날 오전 10시 김해시청 앞 주차장, 내동 소방파출소 앞 등지에서 반대집회와 시민홍보전을 갖고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고성, 사천, 밀양, 창녕, 거창, 남해 등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지역 농민회, 진보연합 등 시민단체 등이 주축이 된 한·미 ‘FTA반대

44) 부산일보, 2006. 7. 8.

45) 매일경제, 2006. 7. 8.

46) 매일경제, 2006. 7. 13.

및 저지대회'가 곳곳에 열렸다.⁴⁷⁾

⑩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행정부가 국회 권능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정부가 한·미 FTA 체결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고, 협정문 초안을 비롯한 1·2차 협상 결과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헌법에 규정된 중요 조약에 대해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권과 심의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⁴⁸⁾

⑪ 한·미 FTA 제4차 협상이 2006. 10. 23~25일 일정으로 시작된 제주 중문단지 신라호텔 주변에는 한·미 FTA 협상을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간에 폭력마찰을 행사하는 등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상과 같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회 갈등의 문제를 해소 시킬 수 있는 정부의 내부협상전략과 노력이 FTA협상이 타결에 이르기까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추진 과정에 따른 기타 문제

정부는 한·미 FTA를 추진하기에 앞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하에 한·미 FTA를 분석해 보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한·미 FTA 추진협상에 앞서 미국측에서 제안한 4대 선결조건을 수락한 바 있다. 그 중 수입차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규제 기준강화의 2년 유예조치나 광우병으로 인해 수입이 금지됐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바로 직결된 문제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중요한 결정에 앞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⁴⁹⁾

47) 부산일보, 2006. 9. 1.

48) 매일경제, 2006. 9. 12.

49) 한미FTA저지 국민운동본부, 전개서, pp.632~633.

(1) 한·미 FTA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2006년 7월 11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가 전국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조사에서 응답자의 89.3%가 한·미 FTA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답했다

한·미 FTA는 대국민 설득에서 성패가 갈리게 되어 있는데 정부가 국정 홍보처에만 맡겨 놓은 채 통상 교섭 본부, 산자부 등의 관계부처에서 한·미 FTA의 필요성을 홍보하지 않음으로써 300여개 농민, 노조, 시민 단체들이 결성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홍보전(인터넷 홈페이지, 집회 시위, 홍보책자 발간, 대국민 홍보, 매체 광고 등)에 뒤지고 있다.⁵⁰⁾

(2) 경제·경영학자 100명 설문조사

동아시아연구원과 매일경제신문사 공동으로 기획하여 2006년 8월 13~25에 걸쳐 경제·경영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대응이나 추진 전략에 대한 평가 결과에 의하면 다음 <표 4-2>에서와 같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 평가에서 학자들에게 최저 50점에서 90점까지 점수를 매기게 한 뒤, 평균을 내 F학점에서부터 A학점까지 평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협상단 구성 문제를 포함한 5개 항목에 대해 학자들은 평균 68점을 부여해 C학점에도 못 미치는 평점을 매겼다.

가장 낮은 점수를 준 분야는 ‘대국민 설득과 홍보’로 평균 62점을 받았다. 다음으로 나쁜 평가를 받은 부문은 ‘현황 파악 및 협상전략 마련’, 그리고 ‘미국에 대한 대응’이었다. 각각 67점과 66점을 받아 평점 C-수준에 그쳤다. 협상단 구성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았다. 평균 70점을 받아 C학점을 기록했다.⁵¹⁾

50) 조선일보, 2006. 8. 1.

51) 매일경제, 2006. 9. 4.

〈표 4-2〉 한·미 FTA 추진전략에 대한 평가(성적)

대국민 설득과 홍보	D(62점)
협상단 구성	C(70점)
현황 파악과 협상전략 마련	C-(67점)
미국측에 대한 대응	C-(66점)

A학점: 90, B: 80, C: 70, D: 60, F: 50으로 산정

자료 : 매일경제, 2006. 9. 4.

이상의 설문결과 향후 추진 전략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FTA가 내년 6월 말에 종료된다는 점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62%에 달했다.

지난번 칠레와 비교할 때 대국민 설득이나 홍보에 실패하고 있고, 너무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 FTA에 관한 전문 인력이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정부는 전담 연구소를 포함해 장기적인 연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결정 과정에서 기업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과 긴밀한 협조와 상의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상단에만 맡기지 말고 산업계 이해당사자와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시켜야 한다.”며, “과거 칠레와 싱가포르를 FTA 협상을 벌일 때 민간 기업들이 정부와 함께 뛰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3) 부산지역 대학생 FTA 의식 조사

부산지역 대학생 설문 결과 한·미 FTA에 대해서는 전체의 49%가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51%가 ‘전혀 모르거나 들어봤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전체의 63%를 차지했으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은

20%에 불과했다.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⁵²⁾

- ① 미국중심의 협상으로 경제의 예측성이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 ② 전 국민적 합의와 소통이 부족한 정부중심의 협상이기 때문이다.
- ③ 정부의 협상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2006년 9월 18~21에 걸쳐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54% 학생들이 “한·미 FTA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여론수렴과 협상안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 이유는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상 전에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약가 재조정 중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의 내용을 담은 4대 선결조건을 통과시킬 것을 제시했고, 우리나라는 줄속적으로 이러한 4대 선결조건을 통과시켜, 한·미 FTA 협상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응답학생 중 ‘한·미 FTA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가 30%(90명), ‘알고는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응답이 48%(1백44명)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⁵³⁾

- ① 한·미 FTA 찬성이유 - 한·미 FTA 협상에 찬성 의견을 내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으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 ‘선진국의 서비스 시스템 도입으로 교육, 공공서비스, 보건 등의 사안이 지금보다 질적으로 나아질 것’이란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② 한·미 FTA 반대이유 - 한·미 FTA 협상을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FTA 협상자체가 평등한 관계에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 ‘경쟁력이 약한 분야의 몰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란 응답이 가장 높았다.
- ③ 한·미 FTA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 - “우리나라 정부가 사전에 국민들의 여론 수렴 없이 FTA 협상을 추진했기 때문이다.”며 “FTA 협상이

52) 부산일보, 2006, 9. 18.

53) 신라대학교 학보, 2006, 9. 29.

계속 줄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나라는 잃는 것이 많을 것”이라 밝혔다. 국민의견 수렴 정도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또한 ‘대체로 그렇지 않다’란 응답이 35.7%(1백 7명), ‘매우 그렇지 않다’가 31%(93명)으로 나타났다.

④ 한·미 FTA 추진전략(국내문제) - 한·미 FTA협상에 있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42.3%의 학생들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고, 27%(81명)는 ‘전면 재검토 돼야한다’고 답했다. 이어 26%(78명)는 ‘한·미 FTA 협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협상일정은 늦춰야 한다.’고 답했다.

이상의 설문조사에서 볼 때 한·미 FTA 협정추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민들의 여론수렴과 그에 따른 협상안의 전면 재검토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익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국민들 또한 이에 많은 관심과 결속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제2절 한·미 FTA 추진 찬·반 논쟁

1. 한·미 FTA 찬성론

그 동안 FTA를 둘러싼 보·혁 간 대결 양상은 자칫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이성적인 접근 없이, 정치적 이해에 따른 국론 분열을 조장할 수 있어 적지 않은 염려를 낳고 있다. 참여 연대와 민주노총 등 300여 개 진보단체로 구성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론)’는 대규모 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에 맞서 국민행동본부와 기독교사회단체 등 12개 보수단체는 FTA지지 집회를 열었다.

FTA와 관련한 찬·반 논쟁점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찬성론자들은 FTA는 세계적 조류이기 때문에 한·미간 협상

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반대론자들은 당장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1980년대부터 통상현안논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치밀한 준비 없는 졸속 협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 외에도 협상시안의 타당성이나 기대효과 등에서도 현격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찬성론자들에 의하면 반대론자들 중에는 반미주의자들이 반미정서를 바탕으로 한·미 FTA반대로 연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보·혁 간의 갈등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표 4-3> 한·미 FTA 찬·반 논쟁점

	찬 성	반 대
협상 필요성	FTA는 세계적 조류	당장 FTA 추진할 필요가 없다.
졸속협상여부	1980년대부터 통상현안 논의 하였으므로 졸속 아니다.	치밀한 준비 없는 졸속 협상이다.
협상시한 타당성	협상기한에 쫓겨 무리해서 타결하지 않는다.	미국 신속협상권 일정에 쫓겨 내년 3월까지 타결하려한다.
기대효과	일자리 창출로 양극화를 완화시킨다.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킨다.
	수출 증가 효과(제조업)	수출증가 효과 미미하다.
	중소기업에 이득이 된다.	중소기업 몰락하게 된다.
	금융경쟁력 강화 계기가 된다.	투기자본 유입으로 금융시장이 잠식된다.

자료: 한국경제, 2006. 5. 18.

또한 정부 자료를 살펴볼 때,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70%를 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성장을 둔화와 함께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사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시점에서 신 성장 동력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시장 확보와 투자 유치 경쟁을

통한 생산력 증대가 필요하므로 세계시장의 20%를 차지하는 미국과의 통상은 도약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70~80년대에 개방정책을 주도한 개도국은 연평균 4.5% 성장했지만, 폐쇄적인 개발도상국은 0.7%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 <표 4-4>에서 알 수 있듯이 한·미 FTA는 ‘미국 시장 확대, 한국 국가경쟁력 제고, 제 2의 선진화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고 하고 있다.

<표 4-4> 한·미 FTA 추진배경

<p>미국 시장 확대 발판의 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세계 최고의 시장, 대한 최대의 투자국, 상품 경쟁력이 판가름 나는 test market으로 통해 미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한·미 FTA를 통해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 및 통상마찰을 완화할 수 있다.
<p>한국국가경 쟁력 제고의 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일, 중, 인도 등 여타 FTA 추진도 가속화하는 계기로서 한국이 세계시장의 허브(“gateway”)로 발돋움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 서비스시장 개방, 안보리스크 완화, 대외신인도 제고 등으로 외국인투자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p>제2의 선진화를 위한 디딤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제 2의 장기 성장 전략”이 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한·미 FTA를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료: 산업자원부(<http://www.mocie.go.kr>).

대한상공회의소도 서울소재 1,50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2006. 7. 28~8. 7)한 결과, 아래 다음 <표 4-5>에서와 같이 응답기업 620개사의 65.8%가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응답은 23.7%에 불과했다. 특히 도소매업종은 응답기업의 72.5%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응답해 제조업 63.9%, 건설업 57.7%에 비해 한·미 FTA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67.2%나 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한·미 FTA를 65.2%나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최근 한·미 FTA 협상을 반대하는 일부 여론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한·미 FTA 관련 기업의견

구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	즉각 중단해야한다	판단유보	계
업종	제조	63.9%(195개)	25.6%(78개)	10.5%(32개)	100%(305개)
	도소매	72.5%(153개)	17.1%(36개)	10.4%(22개)	100%(211개)
	건설	57.7%(60개)	31.7%(33개)	10.6%(11개)	100%(104개)
기업규모	대기업	67.2%(131개)	24.6%(48개)	8.2%(16개)	100%(195개)
	중소기업	65.2%(277개)	23.3%(99개)	11.5%(49개)	100%(425개)
계		65.8%(408개)	23.7%(147개)	10.5%(65개)	100%(620개)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조사결과 2006. 7. 28~8. 7.

특히 한·미 FTA를 계기로 거대독점자본인 자동차·전자·섬유 등의 대미 수출증가는 물론 의료산업의 영리화, 금융 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 폐지, 미디어 산업에 대한 소유제한 폐지 등을 통해 자본축적의 새로운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한·미 FTA 반대론

FTA반대론자들은 GATT체제하의 FTA와 WTO체제하의 FTA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WTO체제에서의 FTA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이라기보다는 ‘포괄적 경제통합협정’으로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한국경제의 높은 미국의존도와 미국에 대한 한국경제의 높은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FTA 체결을 통한 양국간 경제통합 수준은 실질적으로 한국경제가 미국경제에 합병되는 것에 가까워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GATT체제는 금융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많은 제한을 가하고, 통상규제 철폐대상을 ‘상품무역’에 국한시킨 ‘규제된’ 자유주의적 세계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하는 체제였다면, 이와 달리 WTO 체제는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을 보장하고, 개별 국민경제의 세계자본주의체제로의 전면적인 통합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자본주의체제의 구축을 지향하는 체제로 보고 있다.⁵⁴⁾

한·미 FTA는 미국에 의한 한국 경제주권의 강탈이며,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자본 이동을 보다 자유화하고, 초국적 금융자본의 소유권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 즉, 수익구조 다원화와 투기적 수익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BIT를 포괄하는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현재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적 형태에 대한 규제방안(한국판 엑스 - 플로리오법 제정 등)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다.⁵⁵⁾

NAFTA결과 멕시코 사례를 들면서, 멕시코는 부분적인 무역량 증대에도 불구하고 성장저조, 심각한 경기과탄, 고용감소 현상을 맞이해 전 세계를 상대로 FTA 협상동결을 선언했으며(2003년 11월), 2006년 미·스위스 FA, 미·아랍에미리트 FTA, 미·카타르 FTA 등이 연속해서 부결

54) 한미FTA저지 국민운동본부, 전개서, p.17.

55) 한미FTA저지 국민운동본부, 상계서, p.399.

되는 등 세계적으로 반 FTA 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⁵⁶⁾

정부는 이미 한·미 FTA 협상 개시 이전에 약값 재평가 작업 중단,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스크린쿼터 축소를 비롯해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이라 불리는 미국측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였으며, 그 이전 일찍부터 수년간 의약품 워킹그룹(실무회의)에서 미국 대사관 관리들이 참석해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하도록 용인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요구한 15개 협상의제를 전면 수용해 미국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아무런 공격적 의제를 담고 있지 못하였고, 협상목표 자체부터가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다.⁵⁷⁾

한국 제조업 제품의 대미 수출증대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공산품 수입관세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조업 제품 가운데 선박, 철강,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미 무관세이므로 FTA에 의한 관세율 인하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미국의 수입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섬유·의류의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고가품의 경우에는 최고 브랜드의 지위를 가지는 선진국 기업과 품질경쟁이 어렵고, 중·저가품의 경우에는 후발 개발도상국에 대해 가격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한다. 섬유·의류는 원산지 규정 때문에 관세인하 혜택도 입기 어렵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관세율이 2.5%로 낮고, 또 현지생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공산품 평균 관세율이 7.5%로 높기 때문에 내수기업, 부품소재기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미국 차의 수입관세 인하 효과는 8%나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⁵⁸⁾

56) 한미FTA저지 국민운동본부, 상계서, p.141.

57) 한미FTA저지 국민운동본부, 상계서, p.207.

58) 한미FTA저지 국민운동본부, 상계서, p.119.

3. 한·미 FTA 찬·반론에 대한 비판

한·미 FTA에 대한 대표적 조직이라 할 수 있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가장 핵심적 반대이유는 “정부가 부정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이다.

이와 같은 주장의 이면에는 국제통상 협상을 하려면 내부협상과 전략 수립을 위한 일정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한·미 FTA 협상 추진은 이러한 과정 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 FTA 협상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더 많아 FTA체결 전보다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데 성급히 협상 추진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대론자들은 협상 당사국인 미국측은 협상준비가 충분하였던 것에 반해 우리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개방화의 수준이 한국측에 비해 미국측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무역질서를 개발한다는 명분아래 협상 대상국에 미국식 즉,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시장의 결정에 많은 것을 맡기는 경제체제표준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지면 달러화가 세계통화로 되어 있는 미국은 자본 통제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지만, 미국의외 국가들은 외환거래의 통제를 통해 외환시장 불안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국식 투자협정 모델에서는 심각한 국제수지 위기 상황에서도 자본통제와 같은 조치의 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국측은 미국측에 비하여 준비해야 할 것이 많고, 그러한 준비에 일정한 기간이 요구되므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측의 한·미 FTA 정책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한·미 FTA 체결시 10년 후 완전개방을 가정하고 GDP가 7.75%추가 성장함으로 910억 달러의 국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대체로 긍정적 효과에 치우친 결과를 내 놓고 있으며, 다른 찬성론자들도 이와 유사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

다. 이러한 자료들을 도출한 예측모델이 CGE모델이다. 이것은 많은 약점을 가진 예측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나온 수치들을 정부는 경제적 효과자료로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변수 조작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허점을 지적하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대외무역수지 흑자액이 ‘조작’된 것” 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사전 공개된 모델링 작업의 숫자에는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 감소 규모가 72.7억 달러였는데, 최종적으로 공개된 숫자가 47억 달러로 줄어있는 사실이 2006년 4월 초 월간 《말》의 기사를 통해 밝혀져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또한 한·미 FTA에 대한 반대론자 중에는 반미감정에 의해 한·미 FTA를 반대하는 감이 없지 않다. 반대를 위한 무절제한 시위와 파괴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는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아무리 여러 기관에 의해 발표되더라도 모든 국민을 만족시키는 데이터는 존재할 수 없다. 데이터는 협상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성공적 협상결과는 정부가 얼마나 국민여론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는가에 달려 있다.

제3절 한·미 당사국간 주요쟁점

1. 한·미 당사국의 입장

형식상 같은 FTA라 하더라도 어떤 국가가 추진하는 협정인가에 따라 성격이 아주 다를 수 있다.

- ① 미국은 협상 상대국에게 농산물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금융서비스, 의료, 문화, 정보통신 인프라, 투자 자유화, 노동·환경 조항까지도 포함한 포괄적인 시장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 ② 미국이 주도하는 FTA 모델은 협상 상대국에 광범위한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을 수반하고 있다. 미국-오스트레일리아 자유무역협정에서도 미국의 포괄적인 시장개방 요구로 의약급여제도, 검역, 지적재산권 보호, 국외직접투자의 관리 등 오스트레일리아의 핵심적 제도가 다 허물어졌었다.

③ 미국 주도의 FTA는 일본, 중국이 추진하는 협정과 달리 과학기술 발전이나 인적자원 개발 등 상대적으로 발전 수준이 낮은 협상 상대국의 경제발전 지원이나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⁵⁹⁾

④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측이 미국에 강하게 요구할 분야인 반덤핑규제 축소 등 무역구제 분야⁶⁰⁾는 연말까지 타결을 시도하려하고 있다.

⑤ 미국은 FTA 협상에서 미국 제약사들의 고가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을 늘리고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을 강화함으로써 제네릭(복제약품)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미국은 우선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지티브 약가제’가 신약의 보험 약 등재를 막는 조치라고 반대하고 있다.

⑥ 한·미 자유무역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농업 부문이다. 한국의 농업 부문은 GDP의 5%와 인구의 11%를 차지하는 데 불과하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크다. 젊은 노동인구 중 단지 6%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 부문의 70%에 달하는 노동력이 50세 이상이다. 이처럼 농업 부문의 경제적 비중이 적지만, 한국이 단기간에 산업화 및 도시화를 이룩했기 때문에 아직도 국민의 상당수는 경제적 비중과 관계없이 농업 및 연관을 맺고 있고, 농업 보호와 보조금제도를 지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농업 문제가 자유무역협상의 가장 큰 장애물로 계속 존재할 전망이다.

⑦ 한·미 FTA에서 3대 쟁점분야가 자동차, 섬유, 농업이고, 의약과 정보통신도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⑧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약제비 적정화방안이란,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 해도 가격

59) 한겨레신문, 2006. 5. 18.

60) 무역구제(trade remedies)라 함은 FTA 체결에 따른 무역자유화의 결과 타방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허용되는 세이프가드조치와 덤핑이나 보조금과 같은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한 반덤핑조치나 상계조치를 총칭하는 것이다.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보험 적용을 하는 제도이다.

⑨ 한국에서는 농수산물은 관세철폐 제외, 관세 부분감축, 관세철폐의 장기간 이행, 수입 쿼터 설정 등으로 방어를 우선하고, 공교육, 공공보건, 의료, 사회복지, 건강보험 등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한·미 양국 간에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은 다음 <표 4-6>에서와 같이 내국민 대우 예외 인정, 관세 및 기타 수수료 면제, 섬유분야 관세철폐, 자동차 배기량 기준 세제 폐지, 건강보험 약가 제도 변경, 농산물 셰이프가드 도입, 투자와 송금 제한조치, 국경 간 서비스무역 일시 입국, 신금융서비스 허용, 통신 기술선택 자율성 보장, 지적재산권 보호기간 연장 등으로 요약 비교해 볼 수 있다.

〈표 4-6〉 한·미 FTA 양국간 주요쟁점

한국측 입장	쟁점 내용	미국측 입장
수용불가	내국민대우 예외 인정	원목, 연안 해운업 예외 규정 마련
미국의 물품취급수수료, 항만유지수수료 면제 요구	관세 및 기타 수수료	미국산 제품에 대해 조정관세 적용 배제, 한국의 관세환급제도 제한 요구
완화된 원산지 규정과 관세철폐 요구	섬유분야	엄격한 원산지 규정과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 요구
수용불가	자동차관련 세제 개편	배기량 기준세제 폐지 요구
약제비 적정화 위해 필요	건강보험 약가제도 변경	재검토 요구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	농업	최소수입물량(TRQ)운영 투명성 제고 위해 엄격한 규정 제안
국경 간 자본거래와 송금 제한하는 일시적 긴급제한조치 허용	투자	예외 불가
기업인 이동 원활화, 전문직 비자쿼터 설정 요청	국경 간 서비스무역, 일시 입국	택배, 외국 법률자문 등 특정서비스에 대한 개방과 경쟁 조건 개선 요청
국경 간 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조항 명시	금융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금융서비스 공급 허용
정부 역할 필요 주장	통신	사업자에게 기술선택 자율성 보장
국제규범과 관행에 따라 합리적 개선 검토	지적재산권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 요구

자료: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http://www.mofat.go.kr>).

2. 한·미 FTA 협상 과정상 쟁점

2006년 6월 5일부터 9일까지 열린 제1차 협상 결과 11개 분야에서는 통합 협정문 작성에 합의를 보았으나, 농업, 위생 검역, 섬유 및 무역구제 등 4개 분과에서는 통합협정문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동차 및 의약품, 의료기기 작업반에서의 합의 도출 실패와 함께 통합협정문 작성에는 합의하였으나, 상당부분 통합협정문상 괄호 처리된 쟁점을 감안하면, 제1차 협상은 양국 대표 간 탐색전 같은 성격이었다. 이때 한·미 양국 간의 주요 핵심 쟁점 사항으로 농업 분야와 위생검역, 섬유산업, 의약품 등이 대두 되었었다.

농업 분야에서는 세이프가드와 TRQ 부분에 대해 입장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고, SPS에서도 분쟁 협의 메커니즘과 투명성 등 기존 쟁점이 그대로 남았다.

한국측은 협상에서 한국 농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가 필요하며, TRQ도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미국은 이에 이견을 표시해 제1차 협상에서 통합협정문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⁶¹⁾

한국은 다른 어떤 상품보다도 높게 책정하고 있는 섬유·의류의 관세를 이른 시일 안에 철폐하고 한국에 불리한 원사 기준 원산지를 직물 기준으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미국은 의류산업이 자국 내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완강히 거절했었다.⁶²⁾

농업, 자동차, 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미국이 공세를 펼 분야였고, 한국은 섬유, 무역구제에서 미국에 개방공세를 펼쳤었다.

제1차 협상결과 한·미 양국 간 주요 쟁점사항을 요약 비교해 보면, 다음 <표 4-7>와 같이 자동차, 의약품, 농업, 금융서비스, 원산지·통관, 섬유산업 등에 참여한 입장 차이를 보였었다.

61) 국제신문, 2006. 6. 9.

62) 한겨레, 2006. 6. 10.

〈표 4-7〉 제1차 협상결과 한·미 양국의 쟁점

한국측 입장	쟁점 내용	미국측 입장
개편불가 표준화돼 있음 불필요	자동차 세제 개편 배출가스 기준 등 표준화 외제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배기량 기준 세제로 개편 표준화 필요 필요
열거주의	의약품 약가산정방식	포괄주의
도입 무역저해 않는 범위 내 운영	농업 세이프가드 관세할당제도(TRQ)	불가 규정 엄격화
소비자 보호 국내법 허용 범위 내 허용	금융서비스 국경 간 거래 신금융서비스	소비자 보호 검토
인정	원산지·통관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방식	도입 불가
합리적 규정 조기 철폐 불가	섬유 원산지 규정 관세 철폐 세이프가드	엄격한 규정 관세 유예기간 연장 도입

자료: 연구자가 정리함.

2006년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2차 본 협상에서는 제1차 협상 때보다 더욱 심도 있게 쟁점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에는 의약품 약제비 적정화 방안, 복제약 가격 산정, 신약 가격 현실화, 자동차 세제 개편과 기술표준, 소비자에 대한 정부의 외제차 개입 방지 등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미국측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포지티브 리스트’제도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협상이 결렬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한·미 양국 간의 주요 핵심쟁점으로 대두된 것은 다음과 같다.

농업부분 쟁점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농산물을 10년 내 전면 개방하겠다는 양허안을 제출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쌀 쇠고기 등 주요 민감 품목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상당수 품목을 15년 이후 개방하겠다는 양허안을 제출한 것과는 뚜렷이 대조가 되었다.

① 미국측 요구 - “미국측이 제시한 농산물 양허안은 관세의 즉시철폐, 2년 내, 5년 내, 7년 내, 10년 내 철폐 등 5단계로 구분돼 있다.” 이는 미국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대부분 즉시 철폐하고, 나머지는 농산물 관세도 최장 10년 이내에는 전면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② 한국측 요구 - 한국측은 양허안 개방 단계를 관세의 즉시 철폐, 5년 내, 10년 내, 15년 내 철폐, 기타(개방제외 등)등으로 나눠 제시하는 등, 농산물 개방에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였다. 특히 쌀과 쇠고기, 콩 등 상당수 민감 품목을 개방제외 대상으로 분류하는 등, 상당한 비중을 10년 이후에 관세철폐 대상으로 분류하여 미국측과 대조되었다.(부산일보, 2006, 8. 19. 토)

이상과 같이 농산물 분야의 한·미간 의견차는 미국은 관세를 낮춰도 피해를 입을 농산물이 거의 없는 반면, 우리는 최대 2조 2000억 원(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추정)의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섬유부분 쟁점에서는 우리나라는 섬유부분 수출 경쟁력을 감안해 양허 단계를 즉시 철폐, 3년 내, 5년 내 철폐 등 3단계로 구분한 뒤, 대부분의 품목을 즉시 철폐로 분류했다. 반면 미국은 양허단계를 일반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즉시 철폐, 3년 내, 5년 내, 10년 내 철폐, 기타(개방제외 등) 등 5단계로 구분한 양허안을 제출했었다.

상품부분 쟁점에서 상품(공산품)분야에서는 이미 제2차 협상에서 양허 단계를 즉시 철폐, 3년 내, 5년 내, 10년 내, 기타 등 5단계로 구분해 제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통일된 양식의 양허안을 상호 교환했다.

한·미 양국이 제출한 상품, 섬유, 농산물분야에 제출한 양허안은 다음 <표 4-8>에서와 같이 상호간 입장차를 보임으로써 제3차 협상에서 많은

논쟁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 4-8〉 한·미 양국의 상품분야 양허안 비교

한국측 양허안	구분	미국측 양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시 철폐, 3년 내, 5년 내, 10년 내, 기타 등 5단계로 구분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한국이 강한 품목은 대부분 즉시 철폐로 분류 	<p>상품(공산품) (품목수: 9,158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시 철폐, 3년 내, 5년 내, 10년 내, 기타 등 5단계로 구분 · 석유화학, 의료기기 등 미국이 강한 분야 즉시 철폐로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시 철폐, 3년 내, 5년 내 철폐 등 3단계로 구분 · 섬유 품목 대부분을 즉시 철폐로 분류 	<p>섬유 (품목수: 1,296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시 철폐, 3년 내, 5년 내, 10년 내, 기타 등 5단계로 구분 · 즉시 철폐는 거의 없고 대부분 10년 내 이상으로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시 철폐, 5년 내, 10년 내, 15년 내 철폐, 기타 등 5단계로 구분 · 쌀 쇠고기 콩 등 개방제외를 비롯해 상당수 15년 이후로 분류 	<p>농산물 (품목수: 807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시 철폐, 2년 내, 5년 내, 7년 내, 10년 내 철폐 등 5단계로 구분 · 농산물 상당 비중을 즉시 철폐 대상으로 분류

자료: 연구자가 정리함.

2006년 9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협상에서는 17개 분과 및 2개 작업반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한·미 양측은 협상에서 관세 양허안과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대한 본격적 협상을 개시하였고,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한 파악을 통해 향후 양허안 및 유보안 협상 진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관세 양허안 협상에서 한국측은 미국측 양허안 내용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였으며, 미국측은 상품과 섬유 분야에서 일부 개선된 수정 양허안을 협상기간 중에 제시하기도 하였다.

서비스/투자 유보안과 관련하여서는 한·미 양측은 유보안 내용에 대한 명료화 작업과 함께, 제4차 협상 전 교환한 관심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로 하였다.

한국측은 미국측의 항공, 해운서비스,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주정부 조치의 구체적인 기재 등 분야에 관심을 전달하고 추가 개방을 요구하였으며, 미국측은 택배, 법률, 회계, 통계, 방송 등의 분야에 대하여 관심이 있음을 전달하였다.

제3차 협상결과 나타난 주요 쟁점 사항들은 다음 <표 4-9>에서와 같이 섬유, 자동차, 금융, 의약품, 지적재산권, 교역개방, 투자, 서비스, 통신 분야로 나타났다.

〈표 4-9〉 한·미 FTA 제3차 협상 주요 쟁점사항

한국측 입장	분야	미국측 입장
세이프가드 반대-원산지 규정 완화	섬유	세이프가드 필요-원산지 규정 엄격 적용
자동차 배기량 기준 세제 유지	자동차	배기량 기준 세제 폐지
국가 간 거래대상에 보험중개·자산운용업 포함 부정적	금융 서비스	보험중개·자산운용업 국경 간 거래대상에 포함. 농업·우체국 공제, 민간영역과 겹치는 국책 은행의 사업영역에 차별성 제거
의사면허 등 양국의 기존제도 상호 인정	의약품	가격결정 과정에 참여 장치 요구 신약 등 특허권 강화 요구
온라인 저작물 일시저장에 따른 복제권 요구 수용 불가	지적 재산권	저작권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일시 저장 복제제도 인정해야
농산물: 즉시-5년-10년-15년-기타 섬유: 즉시-3년-5년	교역 개방 단계	농산물: 즉시-2년-5년-7년-10년 섬유: 즉시-3년-5년-10년-기타
급격한 자본유출 방지위해 필요 필요성 인정하나 재소 대상과 절차 신중히 검토	투자	개방정신에 위배되므로 반대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도입
상호 전문직 비자쿼터부여, 출입국 절차 간소화	서비스	신중한 검토 필요
협정문보다 유보안 협상이 바람직		협정문 반영이 바람직
국내시장 파급효과 분석 후 판단	금융	현지법인 설립과 개별심사 등 제한된 범위 내 허용
민간보험사와 다른 규제 불가피 정책목표 달성위한 정부개입 필요		민간보험사 수준 금융 감독 필요
기간통신사업자 49% 제한 유지	통신·전자 상거래	통신사업자가 기술방식 자율선택
무관세 관행 유지, WTO 결정 후 재고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콘텐츠와 전달매체 모두 관세 대상		영구적인 무관세화가 바람직
		전달매체에만 관세 부과

자료: 연구자가 정리함.

2006년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되었던 제4차 협상에서는 16개 분과 및 2개 작업반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제4차 협상에서도 제3차 협상에서 다루어졌던 쟁점들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었다.

섬유, 자동차, 의약품, 농산물, 금융서비스, 지적소유권 등이 다루어졌으나, 핵심적 쟁점에 대해서는 양측이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진전이 미미하였다.

섬유분야 협상은 관세, 원산지, 셰이프가드가 주요쟁점이다. 미국측이 관세양허안을 제시하였으나, 한국측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측이 Yarn Forward 완화를 주장하였으나, 미국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동차 분야는 미국측이 배기량 기준 세계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폐기 불가 방침을 고수하였다.

의약품 분야는 제3차 협상에서 쟁점이 되었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한국측이 계획대로 연내 추진을 미국측에 전달하였다. 그렇지만 세부 내용은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제3차 협상 쟁점 가운데 한국측의 농산물 셰이프가드 도입 주장에 미국측이 수용·합의하였다. 그러므로 미국측의 양어 개선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쟁점이 되는 국경간 거래, 신금융서비스 허용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타협 가능한 문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다.

지적재산권 협상에서는 저작권 보호 기간에서 이견이 여전하다.

3. 한·미 FTA 향후 추진 쟁점분석

제4차까지의 협상 결과 한·미 양측의 주요 쟁점 사항은 섬유류, 무역구제, 자동차세제, 의약품, 농산물, 금융, 통신, 지적재산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섬유류는 한국이 미국에 비해 경쟁우위를 가진 분야이다. 우리는 각

중 섬유류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최대 5년 이내 철폐를 요구한 반면, 미국은 당초 제시한 양허안에서 자국의 섬유시장 보호를 위해 최장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방하되 상당수 품목을 개방제외 품목으로 분류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관세철폐보다 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이나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한 관세당국간의 협력을 요구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한국측의 요구로 제3차 협상기간 중 미국은 수정양허안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② 원산지 인정기준도 섬유분야의 핵심 쟁점사항이다. 우리는 미국측의 원산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자국의 섬유업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철폐 대상품목에 대해 원사까지 원산지국에서 생산해야 원산지국 제품으로 인정한다는 엄격한 원산지 규정(Yarn Forward)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③ 자동차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우리의 배기량별 세제의 폐지를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는 정책목표 달성과 세수확보 차원에서 폐지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④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문제는 미국 측이 정치적 성격상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무역원활화라는 FTA 취지를 감안, 반덤핑 조치 등 무역구제조치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한국측 제안에 대해서는 미국측은 의회 입법사항으로 양자협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⑤ 의약품 협상과 관련하여 미국측은 '건강보험 의약품 선별등재 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수용을 조건으로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및 가격결정 과정에 자국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⑥ 농산물 분야는 섬유와 입장이 반대다. 한국측은 총 품목 중 20% 정도인 284개 품목을 개방제외로 분류했다. 농산물 수입관세도 즉시, 5년, 10년, 15년에 걸쳐 철폐하거나 관세철폐 예외적용을 받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측은 예외 없는 전품목 관세철폐와 10년 내 완전개방 원칙을 주장하였다.

⑦ 서비스 분야는 방송과 통신, 법률과 회계서비스, 우체국 택배 등에 대해 미국측이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방송의 경우 케이블TV(49%)와 위성TV(33%)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통신분야도 기간통신사업체의 외국인지분을 49%에서 51%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해운서비스 개방과 함께 엔지니어, 간호사 등의 전문직 자격증을 상호 인정하고, 전문직 비자 쿼터를 별도로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상에서 양측의 합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분야로는 금융서비스를 꼽을 수 있다. 국경간 거래와 신금융서비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소비자금융은 국경간 거래 논의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신금융서비스의 판매도 온라인 방식은 허용하지 않고 현지주재 법인이나 지점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하지만 미국측은 우체국 보험을 비롯한 국책은행, 농·축협 등에 대한 특혜를 없애라는 요구를 제기하였다.

⑧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측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재의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릴 것을 주장하였으며, 경쟁분야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을 협정문상에 규제대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5장 한·미 FTA의 성공적 대응전략

제1절 한·미 FTA 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1. 한·미 FTA에 대한 대국민 홍보 설득

한·미 FTA의 영향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한·미 FTA 교섭과정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정보 공유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전적인 논의가 결핍되고, 합의도출이 어려워 향후 FTA 체결에 따르는 진통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과의 대화 채널을 확보하고,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정보 공유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와 합의로 한국에 보다 유리한 협상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중수 교수는 “공식적인 국내 협상체제 정비를 통해 관련 부처와 이해집단간 이견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한·미 FTA가 꼭 성사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내부 조율을 위한 정부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대여론이 확산되자 뒤늦게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체계적 홍보 전략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거의 행정부 위주로 통상정책이 운영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때로는 부처간, 당정간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이 부족하여 정책의 시행착오를 격기도 했다. 또한 의견 충돌로 부작용과 정치적 파행을 겪어 오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의 혼선과 정치적 파행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므로 정부의 어떤 홍보정책도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다.

먼저,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부처간, 당정간, 충분

한 정보교환과 의견 조율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 동안 꾸준히 추진되어온 국민들에게 한·미 FTA 협정에 대해 자유화, 개방화와 세계적 추세에 따라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개방적 통상국가」라는 국가적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시장 개방은 산업구조조정, 기업경쟁력 강화, 소비자 후생증진 등을 가져와 결국은 국민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홍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홍보과정에서 보다 중립적 연구기관을 통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활용, 예측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홍보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국내협상을 위하여 국회의 기능 강화와 더불어 관련 산업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 및 수출산업의 적극적인 국내협상 참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미 FTA 체결로 인하여 대미 수출 및 해외투자기회 확대라는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되는 수출산업들의 적극적인 국내협상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통상협상관련 국내 협상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경쟁산업의 입장이 논의를 압도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최대 수익자라 볼 수 있는 수출산업들은 시장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서 발표가 고작이었다. 그리고 수출산업들은 수입경쟁산업의 반대를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대규모 재정부담증가라는 장기적인 결과 및 협상지연에 따른 현지국에서의 상대국 경쟁력 약화라는 단기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수출산업의 국내협상 참여여부 및 참여범위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동 산업의 독자적인 판단에 달려 있으나 한·미 FTA관련 국내협상전략으로 FTA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설득 작업 강화 및 수입경쟁산업 우려의 완화를 위한 대책 제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국내협상의 핵심은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지만,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대수혜자인

수출산업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참여 노력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거에 수출산업들이 다자 및 양자통상협상의 개시 이전단계에 협상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정부에게 협상개시를 촉구하는 데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 온 반면에 일단 협상이 개시된 이후에 국민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수출산업 차원에서의 노력은 미흡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둘째, 협상이 본격화된 이후 수입경쟁산업의 우려가 제기되었을 때 동산업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은 거의 전적으로 정부에 맡겨두는 경향을 보이면서 수출산업의 실질적인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대외협상이 종료되고 국회 비준을 위한 단계에 돌입하였을 때 민감한 수입경쟁산업의 반발 강도가 증가하는 단계에서 효과적이고 원만한 국내협상을 위한 수출산업의 가지적인 노력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셋째, 효과적인 협상추진을 위한 국내수출산업의 활동 노력으로 한·미 FTA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에 적극적인 기여와 수입경쟁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들 수 있다. 여기서 강조할 사항은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으려는 자세는 일반적인 경제원칙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의 개념에 단지 수출산업이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재정부담이라는 간접비용도 포함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전략인 국민공감대 형성에 대한 기여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정부와 긴밀한 협력 하에 전략수립 및 추진이 바람직하다. 특히, 개별산업차원의 접근보다 수출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다섯째, 수입경쟁산업에 대해 민감한 산업들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산업소재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지원과 동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미 FTA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한·미 FTA는 정치적 변수와 경제적 변수가 혼재되어 많은 국민이 혼란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다.

찬·반 논란 가운데는 극좌, 우측 논리가 지나치게 편파적이거나, 극단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개별 산업부문의 이해득실에 집중되어 거시적 국민경제 효과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도 없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민간연구기관의 연구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나 특정 이해관계 집단이 설립한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늦었지만, 대통령 직속기구로 ‘한·미 FTA 체결지원 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에 들어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위원장, 민간위원 7명,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된 1개의 지원 위원회만으로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역부족일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통상관련 학회, 학자, 연구기관들의 FTA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협조 참여가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오피니언 리더 및 국민들에게 한·미 FTA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게 되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한·미 FTA에 대한 정부 및 정치권의 조율

한·미 FTA 협상 타결이 협상 대표단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거나, 지연된다면 국력만 소모한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국제적 신뢰를 떨어뜨려 향후 FTA 추진에도 장애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행정부는 국회의 협력을 얻어낼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서부터 정보 공개와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도 거시적 관점에서 한·미 FTA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FTA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한 사례를 보더라도 국

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외국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1989년 1월에 발효된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1994년에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추진과정에서 협정 내용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행정부가 피해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우려 사항을 해소하고 또한 의회가 자유무역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한 것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협정의 발효를 가능하게 한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NAFTA와 관련하여 미국 행정부는 지역구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할 수 없는 미국 의원들에게 동 협정의 혜택을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과 병행하여 비준시 찬성을 약속받기 위하여 일부 지역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제2절 취약산업과 피해예상계층에 대한 대책

1. 취약 산업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책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FTA에 대한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핵심 문제는 바로 직접적 혹은 잠재적으로 손해를 보는 이해 집단에 대한 보상인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농민단체·노동단체·시민단체가 FTA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제3장 표(3-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피해가 크게 예상되는 분야는 농산물과 의약품분야이다.

FTA 체결의 근본적인 목표가 정치·경제적 발전과 후생복지 증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 중 농산물 분야는 단순한 교역적 차원을 넘어 식량안보, 식생활 문화, 환경문제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도시의 일반 국민들도 정서적으로 농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업분야의 해결 없이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그렇지만 농업부문 개방을 회피할 수만

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시장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고, 농민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협상과정에서도 미국측을 설득해서 개방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정한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농가소득보조금제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도 농산물 지지가격 인하에 대응하여 생산 중립적 직접지불제를 통한 보조금 정책으로 농가소득을 종전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 중립적 소득보상 직접지불제는 보조금협정(SCM)상의 감축대상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WTO체제하에서도 농가소득 지지를 위한 유효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되고 있다.

제약업의 경우, 관세 철폐에 따른 미국으로의 수출 증가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생산기준을 확보한 기업이 얼마 되지 않아 미국 시장을 확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간 국내 제약업체들은 제네릭 개발이 중심이 되다보니, 다분히 영업력 확대위주의 정책에만 주력했고, 선진 기업과 겨룰 수 있는 제품 개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국내 의약시장에서도 영업력뿐만 아니라, R/D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영세제약업체들이 R/D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2. 피해계층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책

노동단체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이다. 한·미 FTA 결과 낮은 가격의 상품이 유입되면, 동 상품을 생산하던 국내 업체들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고, 실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먼저 FTA가 실업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찾아

갈 수 있도록 사회연결망을 강화하고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은 국민보건의 문제와 손해 보는 집단의 생존권 보장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보상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신뢰를 준다면 손해를 보는 집단이 생존권 보장에 대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식품류 수입이 증가될 때 국민들은 보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미 FTA가 체결되어 수입이 늘어나더라도 철저한 검역과 엄격한 수입기준이 확립되어 있다면 수입품의 위생상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상품에 대한 원산지와 생산일자를 표기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면 국민보건에 대한 우려는 사라질 것이다.

3. 합리적 구조 조정과 경쟁력 강화

정부가 한·미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제약, 금융, 교육, 법률 등의 산업에 대하여 합리적 구조 조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직접적 보상보다 장기적 측면에서 더욱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일본이 2005년 3월 22일 소비자 중시의 식료 공급 및 소비 시스템 확립, 바이오 기술 등을 이용한 농업 기술 개발 추진, 농림수산물 및 식품 수출 촉진 등에 관한 전략을 중심으로 새로운 식량·농업 농촌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공격형 농업정책으로 전환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도 농업지원에서 농촌지원으로, 생산지원에서 생계지원으로, 정부개입이 아닌 시장 기구를 통한 지원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농민들에게 특수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보조금도 지급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재배하게 함으로써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과 농촌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농업부문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농을 육성하며, 경영마인드를 고취하는 등 기업 부문

의 경쟁력 요인을 농업에 접목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약업의 경우, 국내 제네릭 전문 기업들이 해외에서 인증하는 GMP 시설을 갖추고 경쟁력을 키워 나간다면, 한·미 FTA 체결이 해외 시장 공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세계 제네릭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인도의 Ranbaxy와 같은 업체들도 비슷한 과정을 통해 미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였다.

그리고 끊임없는 내부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한·미 FTA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멕시코의 경우, 내부 개혁에 실패하여 NAFTA 협정 효과가 조기에 소멸되어 오히려 수출 중심의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성장기반 강화에 실패하였다. 멕시코는 NAFTA 협정 효과가 본격화된 1996년 이후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5%로, 이전 10년간의 2.6%에 비해 2.9% 상승하였다. 그것은 NAFTA 협정 이후 수출, 제조업 생산성 및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1년을 정점으로 수출경쟁력 증가 효과는 소멸되고, 내수성장도 확충되지 않아 경제성장률은 NAFTA 협정 이전 수준 이하로 급락하여, 2001년에서 2005년 연평균 성장률이 1.9%에 그쳤다. 이는 지나친 정부주도의 성급한 개혁이 성장기반강화에 실패하고 말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대부분 가공무역 및 조립생산에 치중되어 멕시코 산업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는 미미했었다. 그러므로 국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보호 및 간섭을 지양하고, 대외 개방과 자유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3절 향후 대미협상의 성공적 추진 전략방안

1. 미국측 전략 분석에 따른 합리적 대응

삼성경제연구의 박수종 수석 연구원이 2006년 5월 31일자 작성한 자료

에 의하면 FTA 체결에 찬·반 의견이 혼재하고 있으나, 2~3년 이내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본 논문의 연구자도 TPA 기한에 지나치게 연연하다보면, 국민적 합의 도출의 문제, 피해산업의 개방화 대비 시간 부족, 협상자체의 줄속가능성으로 국회의 비준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한·미 FTA가 초래할 수 있는 대내외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97개에 이르는 세계의 FTA는 협정의 대상과 범주 그리고 자유화 이행기간 등의 측면에서 천차만별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사정과 수준에 맞는 한·미 FTA를 디자인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그 내용이 관철되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이다.

쌀 등의 민감 농산품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 또는 유보하며, 의료·교육·전기·가스·에너지 등 주요 공공부문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적용은 제한하고, 기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기초를 해치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등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즉, 이것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요구하는 미국에 맞서 '낮은 수준의 제한적 FTA'로 가자는 주장이 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이 같은 FTA를 고수하겠다고 한다면 미국과의 협상은 난항에 빠짐으로써 2~3년 장기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번 시간 동안 우리는 그동안 소홀히 했던 'FTA의 사전 조치들'을 사후에라도 취함과 동시에 자체적인 산업구조조정 지원책과 사회안전망 및 보상체계 확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협상단은 각 쟁점별 협상 방안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협상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농산물 분야와 같은 국민적 관심과 이해 관계자의 반발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측을 설득하여, 단계별 개방을 얻어내야 할 것이다.

또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부속서를 활용 유보 조항을 작성하여 피해가 조절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전문인력 확충과 분야별 대표자 협상 참여

일각에서는 현재의 불리한 부분만을 부각시키며, 한·미 FTA 협상 자체를 반대하는 주장도 있으나, FTA는 또 국제화의 시대 추세이고, 개방화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협상이기 때문에 어느 한 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진행되지 않고, 이익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안 없는 반대보다는 개방에 대비한 적극적인 전략을 모색하면서 협상이 최대한 바람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산하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구에 이르기까지 대미 전문가들을 찾아서 협상에 참여시키고, 당해산업분야별 대표자도 협상에 참여시켜 대미에 대응한다면 최선의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보다 더 큰 규모의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야별 이해득실 계산에 집중한 나머지 장기적 국가 비전 차원의 논의가 소홀해 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분야마다 요구되고 처한 현실이 상이하기 때문에 분야별 전문인력의 참여는 협상수준결정은 물론이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가 포괄적 협상인 만큼, 협상규모만 보더라도 19개 분과에서 220명이 참여하고 있다.

먼저 분야별 전문지식 습득과 대미에 대한 고도의 협상지식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농업, 섬유, 농업구제, 원산지, 경쟁, 정부조달, 기술장벽, 서비스, 의약품, 자동차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미국의 전략에 대응한 각 분야에 적합한 협상방안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3. 대미 협상쟁점 분야별 구체적 대응

제4장 3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미 양국의 주요 쟁점사항은 섬유류, 무역구제, 자동차세제, 의약품, 농산물, 금융, 통신, 지적재산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앞의 주요 쟁점 분야별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섬유분야 - 협상 쟁점은 앞의 표(4-4)에서와 같이 관세, 원산지, 섬유세이프 가드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섬유분야 협상과 연결된 하나의 사안으로 인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측은 이중 원사기준 원산지 인정 기준인 Yarn Forward⁶³⁾규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관세 조기 철폐와 섬유세이프 가드를 저지하는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미국측의 입장에서 보면, Yarn Forward 규정을 적용하는 한, 한·미 FTA가 체결되어 미국의 섬유관세가 인하되더라도 한국산 또는 미국산 원사를 쓰지 않는 직물·의류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한국기업은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 섬유산업은 2005년 기준 86.7%가 직물·의류의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직물·의류업체들이 기초 공정은 저임금의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처리하고, 최종 마무리만 한국에서 하고 있다. 따라서 Yarn Forward가 존속하는 이상 미국 섬유업계의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측은 핵심쟁점인 관세, 원산지, 섬유세이프 가드 중 Yarn Forward 규정 사수에 역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측이 Yarn Forward 완화를 끝까지 주장한다면, 이에 상응한 양보를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측은 이런 미국측의 입장을 활용하여 Yarn Forward를

63) 양 포워드(Yarn Forward): 한국산 원사를 사용한 섬유에 한해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양 포워드' 기준을 비롯해 시장교란 염려만 있어도 발동할 수 있는 특별 세이프가드를 요구할 전망이다.

양보하는 대신, 미국측의 섬유고관세 조기 철폐와 섬유 세이프 가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내 놓을 수 있는 것은 Yarn Forward를 적용하게 되면 국내 섬유제품 기업들은 국내산 원사 직물을 구매하게 될 것이고, 직물업체들은 수입대신 국내산 원사를 구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 방직협회가 내 놓은 자료에 의하면, 국산 원사 사용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요인이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5% 내외이고, 의류의 제조 원가 비중을 30% 정도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최종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1.5%에 불과하다. 가령, 미국의 섬유류 평균 관세율 8.9%를 감안하면 흡수 가능한 원가상승으로 판단된다.

② 자동차세제 - 협상 쟁점은 미국은 우리의 배기량별 세제의 폐지를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는 정책목표 달성과 세수확보 차원에서 폐지불가를 고수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문제는 미국 측이 정치적 성격상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북 핵실험 계기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무역원활화라는 FTA 취지를 감안, 반덤핑 조치 등 무역구제조치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우리 측 제안에 대해서는 미국측은 의회 입법사항으로 양자협정에서 다를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것도 고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③ 의약품분야 - 협상에서 미국은 '건강보험 의약품 선별등재 방식 (positive list system)'의 수용을 조건으로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및 가격결정 과정에 자국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그동안 미국 제약회사들이 기존의 제도에서 이미 차별을 받아왔고, 새로운 정책은 그 차별을 더 크게 할 것이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 제약회사를 의도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제도의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되, 참여의 범위를 미국의 제약회사 뿐 아니라, 한국시장에 진출한 모든 제약회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및 가격 결정 과정에 미국측 이해 관계자를 참여시킴으로 미국 제약회사 신약들의 등재품목수와 신약 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므로 미국 의약품의 한국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이다.

미국 의약품의 한국시장 진출이 확대되는 것에 상응해 우리 보건·의료 인력의 대미 진출 걸림돌이 제거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④ 농산물분야 - 섬유와 입장이 반대다. 우리 측은 총 품목 중 20% 정도인 284개 품목을 개방제외로 분류했다. 농산물 수입관세도 즉시, 5년, 10년, 15년에 걸쳐 철폐하거나 관세철폐 예외적용을 받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미국 측은 예외 없는 전 품목 관세철폐와 10년내 완전개방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농산물과 관련해 특히 쌀은 2004년에 미국을 포함한 9개국과 이미 10년간 관세화 유예에 합의한 바 있으므로 추가 개방 불가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여타 민감 농산물도 양허 제외, 관세 부분 철폐, 관세철폐 기간의 장기간 설정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⑤ 서비스분야 - 방송과 통신, 법률과 회계서비스, 우체국 택배 등에 대해 미국 측이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방송의 경우 케이블TV(49%)와 위성TV(33%)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통신분야도 기간통신사업체의 외국인지분을 49%에서 51%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해운서비스 개방과 함께 엔지니어, 간호사 등의 전문직 자격증을 상호 인정하고, 전문직 비자 쿼터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을 연계하여야 할 것이다.

⑥ 금융 서비스 - 대체로 양측의 합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분야이다. 국경간 거래와 신금융서비스⁶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소비자금융은 국경간 거래 논의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신금융서비스의

64) 신금융서비스(new financial services): 상대국에는 존재하나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금융서비스를 의미함. 세계무역기구 금융서비스양해(understanding on commitments in financial services)와 달리, 한·미 FT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금융서비스는 ① 국내법의 제·개정이 필요 없고 ② 금융정책상 국내 금융기관이 동일한 신청을 하였을 것이며 ③ 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법적 형태를 제한할 수 있고 ④ 금융감독당국의 개별적인 허가·승인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의 신금융서비스임. 또한, 금융건전성의 유지를 위해 신금융서비스를 제한하는 국내 법률을 제·개정할 수 있음.

판매도 온라인 방식은 허용하지 않고 현지주재 법인이나 지점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우체국 보편을 비롯한 국책은행, 농·축협 등에 대한 특혜를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보험회사, 민영 은행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들 금융기관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면, 미국측 요구를 수용해도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⑦ 지적재산권분야 - 미국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재의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릴 것을 주장하였으며, 경쟁분야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을 협정문상에 규제대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문제는 향후 협상에서 한국측 안과 절충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대규모기업집단을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는 문제는 현재 한국측의 산업구조상 신중한 타결이 필요한 부분이다.

⑧ 무역구제 분야 - 본 분야의 협상은 마지막까지 어렵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지금까지 반덤핑규정의 여러 유형 중 FTA 당사국의 반덤핑 법 적용 유형을 선호하고 있다. NAFTA나 미·싱가폴 FTA에서도 본 유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미국은 2002년 무역법을 통해 대통령에게 통상협상에 따른 TPA를 부여하면서 반덤핑 규정 협상은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미국측은 한·미 FTA 무역구제협상에서 반덤핑규정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측의 입장은 그간 체결한 FTA에서 WTO 반덤핑협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유지하여 오고 있다. 그런데 한·미 FTA의 무역구제 협상에서는 WTO 반덤핑협정보다 강화된 기준을 규정한 유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국측이 반덤핑 발동요건을 강화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미국의 반덤핑조치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1983년 이후 2005년까지 미국의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 부담액이 373억 달러로 동기간의 대미 수출액 7%에 해당되고 있다. 2006년 초 한국무역협회 부설 무역연구소가 대미수출업체 5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미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미국의 무역구제법이 불합리하고 과도하

게 적용한다가 30.7%(308건)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미국측의 반덤핑규정을 유지한다면 관세의 인하 및 철폐가 이루어지더라도 한국기업의 대미수출효과는 많이 줄어들 것이므로 쉽게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역구제는 한국측이 미국측에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격적 의제 중의 하나이므로 한·미 FTA 협상전략상 끝까지 쟁점화하여 다른 쟁점사안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이프 가드 조치와 관련해서는 다자간 긴급조치 발동 시 FTA체약국 산 제품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규정을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사례로 미국은 지난 2002년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 가드 조치를 발동하면서, NAFTA 체약국인 캐나다 및 멕시코산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세이프 가드 조치 적용을 배제하여 준 사례가 있다. 농산물 특별 세이프 가드 도입 문제의 경우 한국의 열위적 농업 경쟁력과 한국국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농산물의 개방 폭을 확대하는 대신 농산물 특별 세이프 가드 도입의 양해를 얻어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이 제시한 협상안은 예상되었던 바와 같이 강경하고 보수적인 내용들이며, 이는 협상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은 상대가 있는 만큼 양측이 상정한 목표를 모두 관철시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므로, 협상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가고 어떤 협상전략으로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달성할 것이냐가 앞으로의 과제다. 이와 관련해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어디까지나 경제논리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상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 조기철폐와 민감품목의 관세철폐 유예를 이끌어내고, 관세철폐 효과가 실질적인 대미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의 엄격한 원산지 기준이 완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덤핑조치 등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는 우리 기업이 미국시장에서 겪고 있는 주요 애로 사항이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긴요하다. 지난 20여 년간 반덤핑과 상계관세로 우리 기업이 낸 부과금은 370억 달러

가 넘으며 이는 대미수출의 약 7%에 달한다.

대규모기업집단을 협정문상에 규제대상으로 명시하자는 미국 측의 요구는 국제 규범에 맞지 않고, 우리 기업의 대외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6장 결 론

RTA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FTA는 국제경제의 중요한 조류가 되고 있다. WTO의 출범으로 국제무역은 이전보다 활발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FTA 체결은 47년간의 GATT 시대보다 9년간 WTO 시대에 더 많이 이루어졌다. 2005년에는 세계 총 무역 중 FTA 체결국간 무역거래 비중이 5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FTA는 개방을 통한 경쟁을 심화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를 유입시킬 수 있다. 그리고 다자주의에 비해 가시적·직접적 효과가 있는 양자 협상이라 할 수 있는 FTA를 선호하게 되었다.

각국은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한국은 이러한 FTA의 세계적 확산 추세 가운데서도 GATT, WTO의 다자간 무역체제에 역점을 두고, FTA 체결에는 다소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그러나 WTO의 DDA 협상 지연과 중단으로 다자체제의 한계에 부딪친 세계 주요국들은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FTA 협상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 통상환경하에서 해외의존도가 70% 이상인 한국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FTA를 통한 국제 시장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인식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약한 FTA 추진 상황을 만회하기 위하여, 동시다발적 FTA 추진을 정책 방향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ASEAN 7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14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을 가진 미국과의 FTA 협상 추진은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미미한 FTA 추진상황을 한꺼번에 만회할 수 있는 계기인 동시에 경제, 외교, 안보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된 포괄적 동반자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2000년까지 캐나다, 멕시코, 요르단, 싱가포르 등 4개국에

불과했으나, 2002년 TPA의 의회 승인 이후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2006년 현재 14개국으로 늘어났다.

이와 같이 한·미 FTA는 미국의 입장에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통상거점 확보와 외교·군사적 관점에서도 중요하게 인식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양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한·미 FTA는 양국 모두가 협상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정부는 한·미 FTA가 이처럼 중요하고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내부적협상 과정인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소모적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라 사회적 갈등 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성급한 협상 추진으로 피해예상 산업과 피해예상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나 경쟁력 취약 분야에 대한 합리적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리고 협상 전 미국측 전략에 대한 분석과 우리측의 합리적 대응방안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늦었지만, 일반국민의 한·미 FTA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국내의 주요 오피니언 리더,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기에 수혜 수출기업들의 적극적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해당부서 위주의 통상정책 운영으로 정부 내 조차 의사소통의 부족함을 드러냈었다. 향후, 정보공유를 통한 전 국민적 협조와 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협상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가 장기적인 국가비전차원의 관점에서 추진되는 만큼, 취약산업과 피해계층에 대한 구체적 보상과 지원 정책 마련은 물론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대내적 과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성공적 대미협상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FTA는 세계적 추세이며, 한·미 FTA는 양국 협상단 모두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협상 중에 있다. 따라서 협상 결렬에 따른 불이익을 감안하여, 성급한 양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측은 TPA 기한 내 협상 타결을 유도하고 있지만, 한국측은 이에 동조하기보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한국측은 ‘윈셋’ 범위내에서 상호 win-win 전략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한·미 FTA 찬성론자들은 분야별 이해관계에 연연하다 자칫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가 결렬됨으로 인하여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가간 협상은 상호 이익을 주어야 하고, 감정적 대응이 아니므로 양측의 이해관계가 합치될 때 가능하다. 한국측 요구가 합리적 논리라면 협상이 결렬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협상이 지연되면 경쟁력 취약산업들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확보를 이루어 내는 등, 그동안 도출된 과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미 FTA 체결 후 한국의 각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계량적 분석을 직접 실시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몇몇 연구기관들의 계량적 분석 결과와 각종 문헌들을 참고하여 한·미 FTA가 초래할 수 있는 대내외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한·미 FTA가 이미 제4차 협상에 이르기까지 추진 중에 있지만, 타결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나타난 한·미 양측의 쟁점과 이에 나타난 과제들을 분석하여 향후 성공적으로 협상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결과로 기여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기홍, 「한국인은 왜 항상 협상에서 지는가?」, 굿인포메이션, 2002.
- 김만길, 「WTO 통상법」, 대왕사, 2006.
-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인텔에듀케이션, 2005.
- 김재봉 외 3인, 「국제통상학개론」, 동성출판사, 1997.
- 김성호, 「국제통상협상」, 두남, 2004.
- 김세영·신상식, 「FTA 확산과 한국의 대응」, 두남, 2003.
- 김용일, 「WTO 세계무역기구협정문해설」, 한국무역경제, 1996.
- 김재준, 「국제무역과 통상협상」, 다산, 2003.
- 김태현 외 2인, 「외교와 정치」, 오름, 1998.
- 박변순 외 4인,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 배기영,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한국의 선택」, 문음사, 1993.
- 사회진보연대, 「한미 FTA, 이미 실패한 미래」, 사회운동, 2006.
- 송기호, 「한미 FTA의 마지노선」, 개마고원, 2006.
- 신경환·박종수, 「국제통상의 이해」, 두남, 1999.
- 왕상한역, 「미국통상법과 대외정책분석」, 법문사, 1997.
- 우석훈,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녹색평론사, 2006.
- 이재기, 「FTA의 이해」, 한울출판사, 2005.
- _____, 「세계화·WTO·FTA 포커스」, 한울출판사, 2005.
- 이창우, 「무한시장 FTA」, 다만북스, 2005.
- 이해영, 「낮선 식민지, 한미 FTA」, 메이데이, 2006.
- 정인교,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 해남, 2006.
- 정인교·노재봉, 「글로벌시대의 FTA 전략」, 해남, 2005.
- 최병일, 「한미 FTA 역전 시나리오」, 랜덤하우스, 2006.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한미FTA, 미래를 위한 선택」, 한국무역협회, 2006.

한미FTA저지 국민운동본부, 「한·미 FTA 국민보고서」, 그린비, 2006.

2. 연구논문

강문성·박순찬,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04-12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고은지, 「한·미 FTA가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LG주간경제, 2006.

권영민, 「한·미 FTA의 쟁점과 전망-한미 FTA는 업그레이드된 한국으로 가는 길이다」, 통일한국, 2006.

_____, 「우리기업의 FTA에 대한 인식」, 제1차 FTA세미나, 2001.

권중현, 「요르단-미국간 FTA 체결 이후 변화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2006.

김경원,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제555호, 삼성경제연구소, 2006.

김일식 외 2인, 「일본의 동아시아 FTA전략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국제지역연구 제9권 2호, 2005.

김종훈, 「한·미 FTA의 의의와 전망」, 외교, 제77호, 2006.

김창태, 「세계통상기구체제하 NA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김현중, 「한·미 FTA, 개방과 경쟁을 통한 도약」,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 2006.

김형주, 「한·미 FTA의 경제적 의미와 협상 포인트」, LG주간경제, 2006.

손기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연구」, 제11권 제1호, 2005.

신용상, 「한·미 FTA 금융협상의 쟁점과 대응방향」, 15권 15호, 주간금융브리프, 2006.

오승구, 「미국의 FTA 전략과 시사점」, 제10호, 성경제연구소, 2004.

- 윤창인, 「한·미 FTA 서비스협상의 방향과 기초」, KIEP 세계경제 5월호, 2006.
- 이경태, 「한·미 FTA 바로 알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이경희 외 2인,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이시욱, 「한미 FTA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원, 2006.
- 이춘삼, 「미국 반덤핑법상 국내산업피해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해석론(상)·(하)」, 통상법률, 제23권·제24권, 법무부, 1998.
- _____, 「미국반덤핑법의 문제점과 대응전략」, 한국관세연구소, 1991.
- 이해영, 「한·미 FTA의 소위 ‘경제효과’ 비판」, 문화과학 45호, 2006.
- 임정빈, 「한·미 FTA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예상효과와 대응 방향」, KIEP·KITA·정경련 공동연구 제2차 FTA 세미나 발표자료, 2001.
- 장성원, 「한국 IT 발전과 한미 협력」, 삼성경제연구원, 2005.
- 전영재,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제453호, 삼성경제연구소, 2004.
- _____, 「한·미 통상협력 확대방안-한미 FTA를 중심으로」, 2005.
- 전종규, 「한·미 금융 관계: 현황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5.
- 정인교,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한국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 조용수, 「한·미 FTA와 서비스업 경쟁력의 현주소」, LG주간경제, 2006.
- 조정란, 「엄격성지수(RI)를 활용한 FTA 원산지규정 분석」, 제10권 제1호, 일본 척식대학 경영경리연구소 객원연구원, 2006.
- 조희재, 「바람직한 한미 기업관계」, 삼성경제연구소, 2005.
- 정인교, 「한·미 FTA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FTA 연구센터, 2006.
- 최세균, 「농산물 시장개방이 국내 농업에 미친 영향」,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2000.
- 한상덕, 「도하개발 아젠다의 출범에 따른 반덤핑협정 개정 대응 방안」, 법무부, 2001.

- 허재준, 「한·미 FTA 체결을 둘러싼 논쟁에 부쳐」, 2006.
- 황동원, 「한·미 FTA와 금융 산업의 문제점」, 현대경제연구원, 2006.
- 황해두, 「동아시아지역 경제 블록화 추진 동향과 대응방안」, 국제문제
조사연구소, 2001.
- 홍정숙, 「한국·일본 FTA의 경제적 효과와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05.

3. 정책보고서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미 FTA 업종별 영향과 과제」, 200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의 의의와 기대효과」, 2006.
- 김병섭,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추진 전략」,
_____, 「한국의 자유무역협 FTA 체결의 의의와 전망」, 2003.
-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신발산업 한국·미국 FTA대응 세미나」, 2006.
- 산업자원부, 「변화는 기회다」, 2006.
- 전국경제인연합회, 「미국의 무역투자장벽과 시사점」, 2006.
- _____, 「한·미 FTA 쟁점사항과 대응과제」, 2006.
- 진보정치연구소, 「한·미 FTA와 한반도의 미래구상-전략적 대안은
무엇인가?」, 2006.
- 한국개발연구원,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6.
- 한국무역통상학회, 「21세기 지역통상환경의 변화와 FTA」, 2006.
- 한국무역협회, 「시애틀 이후의 WTO와 한·미 FTA 전망」, 세계경제
연구원, 2000.

4. 해외문헌

- Balassa, B.,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61.
- De Melo, Jaime & David Rolland-Holst, *Industrial Organization and*

- Trade Liberalization : Evidence from Korea*” in Robert E. Baldwin eds, *Empirical Studies of Commercial Polic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 Elagaraa, A., *The Economics of the European Community*, New York: St. Martin Press, 1988.
- Manyin, Mark E., *South Korea–U.S. Economic Relations: Cooperation, Friction and Prospects for an FTA*, CRS Report for Congress, 2006.
- Marco, C.E. & J. Bronkers, *WTO Implementation in the European Community, Anti-dumping, Safeguards and Intellectual Property*, *Journal of World Trade*, Oct, 1995.
- McCarthy, Margaret, *LIFT:INFORUM’s Model of the U.S. Economy*, Economic Systems Research, 1991.
- McDonald, Frank & Stephen Dearden,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Secon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94.
- Nyhus, Douglas, *The INFORUM International System*, Economic Systems Research, 1991.
- Pastor, Rafael, *The Impact of Free Trade Agreements on Intellectual Property Standards in a Post-TRIPS World*, 2006.
- Pfeiffer, Margaret K., *The Legal Framework of United States–Korea Trade Relations*,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the Dynamics of U.S : Korea Trade Relations, New Haven, November 10–12, 1989.
- Rogowsky, Robert A., *U.S–Korea FTA: The Economic Impact of Free Trade between United States and Korea*, Presented to AEIKITA Conference, 2004.
- USITC, U.S–Korea FTA : *The Economic Impact of Establishing a*

Free Trade Agreement(FTA)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ashington D.C, 2001.

Viner, J., *The Customs Union Issue*, New York: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50.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1947)

Article XXIV

Territorial Application - Frontier Traffic - Customs Unions and Free-trade Areas

1.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he metropolitan customs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and to any other customs territories in respect of which this Agreement has been accepted under Article XXVI or is being applied under Article XXXIII or pursuant to the Protocol of Provisional Application. Each such customs territory shall, exclusively for the purposes of the territorial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be treated as though it were a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at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shall not be construed to create any rights or obligations as between two or more customs territories in respect of which this Agreement has been accepted under Article XXVI or is being applied under Article XXXIII or pursuant to the Protocol of Provisional Application by a single contracting party.

2.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 customs territory shall

be understood to mean any territory with respect to which separate tariffs or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 are maintained for a substantial part of the trade of such territory with other territories.

3.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not be construed to prevent:

(a) Advantages accorded by any contracting party to adjacent countries in order to facilitate frontier traffic:

(b) Advantages accorded to the trade with the Free Territory of Trieste by countries contiguous to that territory, provided that such advantages are not in conflict with the Treaties of Peace arising out the Second World War.

4. The contracting parties recognize the desirability of increasing freedom of trade by the development, through voluntary agreements, of closer integration between the economies parties to such agreements. They also recognize that the purpose of a customs union or of a free-trade area should be to facilitate trade between the constituent territories and not to raise barriers to the trade of other contracting parties with such territories.

5. Accordingly,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not prevent, as between the territories of contracting parties, the formation of a customs union or of a free-trade area or the adoption of an interim agreement necessary for the formation of a customs union or of a free-trade area; Provided that:

(a) with respect to a customs union, or an interim agreement leading to a formation of a customs union, the duties and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 imposed at the institution of any such union or interim agreement in respect of trade with contracting parties not parties to such union or agreement shall not on the whole be higher or more restrictive than the general incidence of the duties and regulations of commerce applicable in the constituent territories prior the formation of such union or the adoption of such interim agreement as the case may be;

(b) with respect to a free-trade area, or an interim agreement leading to the formation of a free-trade area, the duties and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 maintained in each of the constituent territories and applicable at the formation of such free trade area or the adoption of such interim agreement to the trade of contracting parties not included in such area or not parties to such agreement shall not be higher or more restrictive than the corresponding duties and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 existing in the same constituent territories prior to the formation of the free-trade area, or interim agreement as the case may be; and

(c) any interim agreement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a) and (b) shall include a plan and schedule for the formation of such a customs union or of such a free-trade area within a reasonable length of time.

6. if, in fulfilling the requirements of subparagraph 5 (a), a contracting party proposes to increase any rate of duty inconsistently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II, the procedure set forth in Article XXVIII shall be taken of the compensation already afforded by the reduction brought about in the corresponding duty of the other constituents of the union.

7. (a) Any contracting party deciding to enter into a customs union or free-trade area, or an interim agreement leading to the formation of such a union or area, shall promptly notify the contracting parties and shall promptly notify the contracting parties and shall make available to them such information regarding the proposed union or area as will enable them to make such reports and recommendations to contracting parties as they may deem appropriate.

(b) If, after having studied the plan and schedule included in an interim agre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5 in consultation with the parties to that agreement and taking due account of the information made availabl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a), the contracting parties find that such agreement is not likely to result in the formation of a customs union or of a free-trade area within the period contemplated by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or that such period is not a reasonable one,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make recommendations to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the parties shall not maintain or put into force, as the case maybe, such agreement if they are not prepared to modify it in accordance with these recommendations.

(c) Any substantial change in the plan or schedule referred to in paragraph 5 (c)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contracting parties, which may request the contracting parties concerned to consult with them if the change seems likely to jeopardize or delay unduly the formation of the customs union or of the free-trade area.

8.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 A customs union shall be understood to mean the substitution

of a single customs territory for two or more customs territories, so that

(i) duties and other restrictive regulations of commerce (except, where necessary, those permitted under Articles XI, XII, XIII, XIV, XV and XX) are eliminated with respect to substantially all the trade between the constituent territories of the union or at least with respect to substantially all the trade in products originating in such territories, and,

(ii)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9, substantially the same duties and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 are applied by each of the members of the union to the trade of territories not included in the union;

(b) A free-trade area shall be understood to mean a group of two or more customs territories in which the duties and other restrictive regulations of commerce (except, where necessary, those permitted under Articles XI, XII, XIII, XIV, XV and XX) are eliminated on substantially all the trade between the constituent territories in products originating in such territories.

9. The preferenc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rticle I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formation of a customs union or of a free-trade area but may be eliminated or adjusted by means of negotiations with contracting parties affected.*This procedure of negotiations with affected contracting parties shall, in particular, apply to the elimination of preferences required to conform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8 (a)(i) and paragraph 8(b).

10. The contracting parties may by a two-thirds majority approve proposals which do not fully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s 5 to 9 inclusive, provided that such proposals lead to the formation of a customs union or a free-trade area in the sense of this Article.

11. Taking into account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arising out of the establishment of India and Pakistan as independent States and recognizing the fact that they have long constituted an economic unit, the contracting parties agree that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not prevent the two countries from entering into special arrangements with respect to the trade between them, pending the establishment of their mutual trade relations on a definitive basis.*

12.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such reasonable measures as maybe available to it to ensure observance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by the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and authorities within its territories.

AD Article XXIV

Paragraph 9

It is understood that the provisions of Article I would require that, when a product which has been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 member of a customs union or free-trade area at a preferential rate of duty equal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duty already paid and any higher duty that would be payable if the product were being imported directly into its territory.

Paragraph 11

Measures adopted by India and Pakistan in order to carry out definitive trade arrangements between them, once they have been agreed upon, might depart from particula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but these measures would in general be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s of the Agreement.

GATT 제24조 양해규정

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XIV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Members,

Having regard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XXIV of GATT

Recognizing that customs unions and free trade areas have greatly increased in number and importance since the establishment of GATT1947 and today cover a significant proportion of world trade;

Recognizing the contribution to the expansion of world trade that may be made by closer integration between the economies of the parties to such agreements;

Recognizing also that such contribution is increased if the elimination between the constituent territories of duties and other

restrictive regulations of commerce extends to all trade, and diminished if any major sector of trade is excluded;

Reaffirming that the purpose of such agreements should be to facilitate trade between the constituent territories and not to raise barriers to the trade of other Members with such territories; and that in their formation or enlargement the parties to them should to the greatest possible extent avoid creating adverse effects on the trade of other Members;

Convinced also of the need to reinforce the effectiveness of the role of the Council for Trade in Goods in reviewing agreements notified under Article XXIV, by clarifying the criteria and procedures for the assessment of or enlarged agreements, and improving the transparency of all Article XXIV agreements;

Recognizing the need for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 obligations of Members under paragraph of Article XXIV;

Hereby agree as follows:

1. Customs unions, free-trade areas, and interim agreements leading to the formation of a customs union or free-trade area, to be consistent with Article XXIV, must satisfy, inter alia,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and of that Article.

2. The evaluation under paragraph 5(a) of Article of the general incidence of the duties and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 applicable before and after the formation of a customs union shall

in respect of duties and charges be based upon an overall assessment of weighted average tariff rates and of customs duties collected. This assessment shall be based on import statistics for a previous representative period to be supplied by the customs union, on a tariff rates and customs duties col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ology used in the assessment of tariff offers in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For this purpose, the duties and charge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shall be the applied rates of duty. It is recognized that for the purpose of the overall assessment of the incidence of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 for which quantification and aggregation are difficult, the examination of individual measures, regulations, products covered and trade flows affected may be required.

3. The "reasonable length of time" referred to in paragraph 5(c) of Article should exceed 10years only in exceptional cases. In cases where Members parties to an interim agreement believe that 10 years would b3 insufficient they shall provide a full explanation to the Council for Trade in Goods of the need for a longer period.

4. Paragraph 6 of Article XXIV establishes the procedure to be followed when a Member forming a customs union proposes to increase a bound rate of duty. In this regard Members reaffirm that the procedure set forth in Article as elaborated in the guidelines adopted on 10 November 1980 (BISD 27S/26-28) and in the 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of GATT1994, must be commenced before tariff concessions are modified or withdrawn upon the formation of a customs union or

an interim agreement leading to the formation of a customs union.

5. These negotiations will be entered into in good faith with a view to achieving mutually satisfactory compensatory adjustment. In such negotiations, as required by paragraph 6 of Article XXIV, due account shall be taken of reductions of duties on the same tariff line made by other constituents of the customs union upon its formation. Should such reductions not be sufficient to provide the necessary compensatory adjustment, the customs union would offer compensation, which may take the form of reductions of duties on other tariff lines. Such an offer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y the Members having negotiating rights in the binding being modified or withdrawn. Should the binding being modified or withdrawn. Should the compensatory adjustment remain unacceptable, negotiations should be continued. Where, despite such efforts, agreement in negotiations on compensatory adjustment under Article XXVIII as elaborated by the 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of GATT1994 cannot be reached within a reasonable period from the initiation of negotiations, the customs union shall, nevertheless, be free to modify or withdraw the concessions; affected Members shall then be free to withdraw substantially equivalent concess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GATT imposes no obligation on Members benefiting from a reduction of duties consequent upon the formation of a customs union, or an interim agreement leading to the formation of a customs union, to provide compensatory adjustment to its constituents.

Review of Customs Unions and Free-Trade Areas

7. All notifications made under paragraph 7(a) of Article XXIV shall be examined by a working party in the light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GATT1994 and of paragraph 1 of this Understanding. The working party shall submit a report to the Council for Trade in Goods on its findings in this regard. The Council for Trade in Goods may make such recommendations to Members as it deems appropriate.

8. In regard to interim agreements, the working party may in its report make appropriate recommendations on the proposed time-frame and on measures required to complete the formation of the customs union or free-trade area. It may if necessary provide for further review of the agreement.

9. Members parties to an interim agreement shall notify substantial changes in the plan and schedule included in that agreement to the Council for Trade in Goods and, if so requested, the Council shall examine the changes.

10. Should an interim agreement notified under paragraph 7(a) of Article XXIV not include a plan and schedule, contrary to paragraph 5(c) of Article XXIV, the working party shall in its report recommend such a plan and schedule. The parties shall not maintain or put into force, as the case may be, such agreement if they are not prepared to modify it in accordance with these recommendations. Provision shall be made for subsequent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11. Customs unions and constituents of free-trade areas shall report periodically to the Council for Trade in Goods, as envisag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to GATT 1947 in their instruction to the GATT 1947 Council concerning reports on regional agreements (BISD 18S/38), on the operation of the relevant agreement. Any significant changes and/or developments in the agreements should be reported as they occur.

Dispute Settlement

12. The provisions of Articles and XXIII of GATT as elaborated and applied by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may be invoked with respect to any matters arising from the application of those provisions of Article XXIV relating to customs unions, free-trade area.

13. Each Member is fully responsible under GATT for the observance of all provisions of GATT and shall take such reasonable measures as may be available to it to ensure such observance by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s and authorities within its territory.

14. The provisions of Articles and XXIII of GATT1994 as elaborated and applied by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may be invoked in respect of measures affecting its observance taken by regional or local Dispute Settlement Body has ruled that a provision of GATT1994 has not been observed, the responsible

Member shall take such reasonable measures as may be available to it to ensure its observance. The provisions relating to compensation and suspens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apply in cases where it has not been possible to secure such observance.

15. Each Member undertakes to accord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and afford adequate opportunity for consultation regarding any representations made by another Member concerning measures affecting the operation of GATT taken within the territory of the former.

허용조항

DIFFERENTIAL AND MORE FAVOURABLE TREATMENT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Decision of 28 November 1979 (L/4903)

Following negotia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the contracting parties decide as follow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I of the General Agreement, contracting parties may accord differential and more favourable treatment to developing countries, without according such treatment to other contracting parties.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pply to the following:

(a)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accorded by developed contracting parties to products originating in developing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b) Differential and more favourable treatment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s of the General Agreement concerning non-tariff measures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instruments multilaterally negotiated under the auspices of the GATT;

(c) Regional or global arrangements entered into amongst less-developed contracting parties for the mutual reduction or

elimination of tariffs and, in accordance with criteria or conditions which may be prescrib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for the mutual reduction or elimination of non-tariff measures, on products imported for one another;

(a) Special treatment on the least developed among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not to raise barriers to or create undue difficulties for the trade of any other contracting parties;

(b) shall not constitute an impediment to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tariffs and other restrictions to trade on a most-favoured-nation basis;

(c) shall in the case of such treatment accorded by developed contracting parties to developing countries be designed and, if necessary, modified, to respond positively to the development, financial and trad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4. Any contracting party taking action to introduce an arrangement pursuant to paragraphs 1, 2 and 3 above or subsequently taking action to introduce modification or withdrawal of the differential and more favourable treatment so provided shall:

(a) notify the contracting parties and furnish them with all the information they may deem appropriate relating to such action;

(b) afford adequate opportunity for prompt consultations at the request of any interested contracting party with respect to any difficulty or matter that may arise.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if requested to do so by such contracting party, consult with all contracting parties concerned with respect to the matter with a view to reaching solutions satisfactory to all such contraction parties.

5. The developed countries do not expect reciprocity for commitments made by them in trade negotiations to reduce or remove tariffs and other barriers to the trade of developing countries, i.e, the developed countries do not expect the developing countries, in the course of trade negotiations, to make contributions which are inconsistent with their individual development, financial and trade needs. Developed contraction parties shall therefore not seek, neither shall less-developed contraction parties be required to make, concessions that are inconsistent with the latter's development, financial and trade needs.

6. Having regard to the special economic difficulties and the particular development, financial and trade needs of the least-developed countries, the developed countries shall exercise the utmost restraint in seeking any concessions or contributions for commitments made by them to reduce or remove tariffs and other barriers to the trade of such countries, and the least-developed countries shall not be expected to make concessions or contributions that are inconsistent with the recognition of their particular situation and problems.

7. The concessions and contributions made and the obligations assumed by developed and less-developed contraction parties

under the provisions of the General Agreement should promote the basic objectives of the Agreement, including those embodied in the Preamble and in Article XXVI. Less-developed contraction parties expect that their capacity to make contributions or negotiated concessions or take other mutually agreed action under the provisions and procedures of the General Agreement would improve with the progressive development of their economies and improvement in their trade situation and they would accordingly expect to participate more fully in the framework of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General Agreement.

8. Particular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serious difficulty of the least-developed countries in making concessions and contributions in view of their special economic situation and their development, financial and trade needs.

9. The contraction parties will collaborate in arrangements for review of the operation of these provisions, bearing in mind the need for individual and joint efforts by contraction parties to meet the development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objectives of the General Agreement.

GATS 제5조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Article V

Economic Integration

1. This Agreement shall not prevent any of its Members from being a party to or entering into an agreement liberalizing trade in services between or among the parties to such an agreement, provided that such an agreement:

(a) has substantial sectoral coverage This condition is understood in terms of number of sectors, volume of trade affected and modes of supply. In order to meet this condition, agreements should not provide for the a priori exclusion of any mode of supply, and

(b) provides for the absence or elimination of substantially all discrimination, in the sense of Article XVII, between or among the parties, in the sectors covered under subparagraph through:

(i) elimination of existing discriminatory measures, and/or

(ii) prohibition of new or more discriminatory measures,

either at the entry into force of that agreement or on the basis of

a reasonable time-frame, except for measures permitted under Articles XII, and XIV bis.

2. In evaluating whether the conditions under paragraph 1(b) are met, consideration may be given to the relationship of the agreement to a wider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or trade liberalization among the countries concerned.

3.

(a) Where developing countries are parties to an agreement of the type referred to in paragraph flexibility shall be provided regarding the conditions set out in paragraph 1, particularly with reference to subparagraph (b) thereof,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development of the countries concerned, both overall and in individual sectors and subsectors.

(b) Notwithstanding paragraph in the case of an agreement of the type referred to in paragraph1 involving only developing countries, more favourable treatment may be granted to juridical persons owned or controlled by natural persons of the parties to such an agreement.

4. Any agre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shall be designed to facilitate trade between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and shall not in respect of any Member outside the agreement raise the overall level of barriers to trade in services within the respective sectors or subsectors compared to the level applicable prior to such an agreement.

5. If, in the conclusion, enlargement or any significant modification

of any agreement under paragraph 1, a Member intends to withdraw or modify a specific commitment inconsistentl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out in its Schedule, it shall provide at least 90 days advance notice of such modification or withdrawal and the procedure set forth in paragraphs 3 and 4 of Article shall apply.

6. A service supplier of any other Member that is a juridical person constituted under the laws of a party to an agre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entitled to treatment granted under such agreement, provided that it engages in substantive business operations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to such agreement.

7.

(a) Members which are parties to any agre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promptly notify any such agreement and any enlargement or any significant modification of that agreement to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They shall also make available to the Council such relevant information as may be requested by it. The Council may establish a working party to examine such agreement or enlargement or modification of that agreement and to report to the Council on its consistency with this Article.

(b) Members which are parties to any agre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which is implemented on the basis of a time-frame shall report periodically to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on its implementation. The Council may establish a working party to examine such reports if it deems such a working party necessary.

(c) Based on the reports of the working parti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a) and (b), the Council may make recommendations to the parties as it deems appropriate.

8. A Member which is a party to any agre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may not seek compensation for trade benefits that may accrue to any other Member from such agreement.

Article V bis

Labour Markets Integration Agreements

This Agreement shall not prevent any of its Members from being a party to an agreement establishing full integration. Typically, such integration provides citizens of the parties concerned with a right of free entry to the employment markets of the parties and includes measures concerning conditions of pay, other conditions of employment and social benefits. of the labour markets between of among the parties to such an agreement, provided that such an agreement:

(a) exempts citizens of parties to the agreement from requirements concerning residency and work permits;

(b) is notified to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